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4대 사회악」의 개념과 경찰활동	9
1. 「4대 사회악」의 개념	9
2.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과 체감안전	13
제2절 체감안전도 조사의 의의	16
1. 체감안전도의 개념	16
2. 체감안전도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3장 조사설계 및 분석	24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24
1. 조사 방법	24
2. 설문의 구성	26
3. 조사대상자의 특성	28

제2절 분석 결과 및 논의	34
1. 4대 사회악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	34
2.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44
제4장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	58
제1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58
1. 4대 사회악에 대한 범죄화 인식 및 양방향 경찰활동 제고	58
2. 범죄취약계층 지향적 경찰활동의 전개	62
3. 치안정책의 지속성, 전문성 강화	65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68
1. 체감안전도 조사의 시사점 및 한계	68
2. 결론	70
참고문헌	73
부록: 체감안전도 조사 표 및 그래프	7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를 ‘안전한 사회’로 정하고 지역별 범죄, 자살, 화재, 교통사고 등 9개의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안전 취약부문에서 개선사업을 도입하는 등¹⁾ 치안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대표적인 치안정책 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경찰력을 집중하였고, 과거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유형의 폭력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tion) 인식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찰활동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 바라는 국민이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치안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의 방향은 주로 치안서비스나 경찰행정에 대한 만족도 또는 체감안전도 등과 같은 시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여기서 체감안전도 조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적용된다.

또한, 체감안전도 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전반

1) 행정자치부, “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보도자료, 2013.

또는 범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체감안전도 조사는 주로 경찰활동이나 범죄두려움, 신고에 대한 의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안전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통해 치안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체감안전도 조사를 할 때 국민의 인식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표집방법 또는 측정도구에 대한 적절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과거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표집의 할당 및 대상 선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경우가 있는데²⁾ 예를 들어, 체감안전도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50대 이상이거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10대 청소년층을 표집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통해 조사결과의 일반화 및 간접적 경험에 의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청·행정자치부(2014)는 사회전반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실시할 때, 전국 19세 이상 성인뿐 아니라 중고생을 포함하고 지역 등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통해 기존의 전화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³⁾

이러한 조사결과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사회의 불안정도에 대해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재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불안요인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간 개인의 연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수준의 표집방법으로 체감안전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분석결과에 대해

2) 정철우·강소영,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14.

3)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조사요원의 근무시간대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로 낮 시간대에 가정에 상주하는 노인층이 표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화조사의 특성상 질문문항이 함축적이어서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는 대상자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영향요인을 검증하거나, 연령이나 성별 등의 비교에 대하여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밝히는 연구결과물들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문화적 요인들 외에도 언론이나 범죄피해 등과 같은 직·간접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특성 및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조사를 설계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예를 들어, 묻지마범죄나 연쇄살인 또는 아동성폭력과 같이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범죄들이 발생하여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범죄정보가 전달될 경우 사회 전반의 체감안전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 대한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지역사회 곳곳에서 관찰하게 된다면 체감안전은 단기적으로나마 높아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차이, 지역의 치안환경에 따라 경찰활동에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 등이 체감안전의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의 한계는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고,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조사방법과 대상을 달리하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체감안전에 대한 빈도분석 외에 차이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간 수치상으로만 확인하였던 조사결과에서 조금 더 다양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두려움’이 아닌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하여 각각 지난 1년간의 증감 여부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

해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간단하게나마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주로 조사의 방향을 구분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은 ‘4대 사회악’으로 명명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그 범위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체감안전도 조사는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또는 ‘치안체감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계층이나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정책들이 실적 위주 또는 양적 경쟁에 치우치게 된다면 정책의 내실화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대 사회악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해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재검토 해보고자 하

4) ‘치안체감도’는 학술적 용어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치안환경 및 경찰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안전한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용어로 실무적 의미로 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치안(治安)’은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을 의미하여, ‘체감(體感)’은 ‘몸으로 어떤 감각을 느낌’으로 정의되어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B9%98%EC%95%88%EC%B2%B4%EA%B0%90&query=%EC%B9%98%EC%95%88%EC%B2%B4%EA%B0%9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였다.

우선, 조사의 방향은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과 체감안전도, 지난 1년간 4대 사회악에 대한 증가 인식 그리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 또는 경찰의 개입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자치부 및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체감안전도 조사와 같은 방향으로 인식, 안전도, 만족도에 대한 큰 범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4대 사회악 근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에서 가장 집중한 치안정책으로, 실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최우선으로 근절되어야 할 범죄유형, 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구성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평소에 느끼고 있는 체감안전도와 더불어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 범죄가 증가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통해 개인적 요인 외에도 매체나 주변 환경, 공식적 범죄통계 등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범죄정보에 영향을 받는 범죄의 증가 정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실무 또는 학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들이 체감안전도를 범죄두려움으로 조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경찰기관에서는 ‘치안체감’이라는 표현으로 치안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체감정도를 조사했다는 점과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체감안전도와 범죄두려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구분하였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각 범죄가 발생할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또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

의 주제인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경찰활동을 전제로 한 체감안전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적으로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 정도, 체감안전도,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 범죄의 증가 및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지역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10대부터 60대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우편(e-mail)과 무작위 전화면접(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문의 구성은 ‘범죄로부터 안전’, ‘지난 1년 간 범죄의 증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수준은 5점 척도를 사용하고 무응답의 경우 결측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한 결측자료 54건을 제외한 1,046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인 분포와 체감안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등 기초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에 따라 4대 사회악 개별 범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4대 사회악」의 개념과 경찰활동

1. 「4대 사회악」의 개념

2013년 현 정부는 출범 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의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청소년 대상 고질적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치안정책과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이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식품안전을 위한 먹거리 관리 등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치안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폭력은 강력범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으로 특히, 아동 및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해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에 와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경찰

의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성폭력 근절을 꼽는 등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력의 집중도 요구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인 학교폭력은 청소년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등 발생률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의 경우 4대 사회악 정책 추진 이전부터 범 정부차원에서의 집중적인 근절 대책이 이루어져 피해 신고율은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안정화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지속적인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범죄대책과 관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다.⁵⁾

그리고 가정폭력은 지금까지 범죄라고 생각하는 대한 인식 즉, 범죄화(Criminalization) 인식은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를 유지하면서 다소 저조했던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도한 음주문화와 남성적 권력문화로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폭력의 하위문화(Subculture of Violence) 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일방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즉 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다음세대에 또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의 반복이 야기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폭력성이 전이되거나, 성장과정에서 비행 또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특히, 최근에는 ‘인천 모자살인사건’ 및 ‘울산 계모살인사건’ 등 잇따른 반인륜적 범죄로 가정폭

5) 피해유형: 사이버폭력('12년 7.3%→'13년 9.1%), 집단 따돌림(11.4%→16.6%), 경찰청 내부자료, 2014.

6) Ostrowsky, Michael K. & Steven F. Messner.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5), 2005, p. 464.

력에 대한 불안감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화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감이 과거와 사뭇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 범죄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과 같이 범죄학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범죄유형은 아니었다. 4대 사회악의 한 범죄유형으로 포함되면서 범죄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김현숙(2013)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불량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불량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4호, 2012.12. 28. 일부개정)밖에 없으며, 이 고시에서도 불량식품을 개념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불량식품’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불량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유해식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이러한 불량식품 범죄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인체에 상당한 해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위해정도에 비해 단속과 처벌이 미미해 안전에 대한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통상 이러한 범죄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거나, 보복의 두려움 등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워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불량식품

7) 김현숙, 부정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3, 3-4면.

범죄를 제외한 개별범죄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범죄학적, 법률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별도의 개념 정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2.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과 체감안전

경찰청이 2013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에 대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및 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를 통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불량식품에 대한 예방활동 및 집중단속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전 경찰관서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폭력특별수사대 및 전담 수사팀,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 등을 신설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폭 증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시행함으로써 전국 지방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 3.0’ 및 ‘눈높이 공감치안’을 바탕으로 민·관 협업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간담회,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 경찰관서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4대악 근절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초기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167명을 증원하고, 지방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총 208명을 발대, 경찰서에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였다. 또한, 270개의 불량식품 전담수사팀 설치하는 등 분야별 전담체계를 구축하였

다. 또한,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100일, 일진 등 불량서클 집중단속 100일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기간 운영, 불량식품 집중단속 100일 등 강력한 단속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4.3%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8.6%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어서 하반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9%P,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10.0%P, 15.8%P가 낮아져 상반기보다 체감안전도가 약간 상승한 반면,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2.6%P 증가해 다른 범죄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체감안전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러나 조사기관마다 표집대상이나 방법, 조사도구가 일정하지 않고 분석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체감안전도 조사가 치안정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들이 추상적인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보다는 체감안전에 영향

8) 행정자치부(2014)의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pm 3.1\%$ 수준이다.

9) 경찰청, 내부자료, 2014.

을 미치는 영향관계들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식과 안전도에 대한 분석방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수치상으로 표현되는 인식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이 표본의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 값을 통한 차이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각 범죄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 예방이 집중될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체감안전도 조사와 분석결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4대 사회악 관련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의 설문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이에 대한 분석방법을 한 단계 정도만 달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과 같은 논의들은 추후 연구에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절 체감안전도 조사의 의의

1. 체감안전도의 개념

국민체감도 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외부 조사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고객만족과 국민체감도 조사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종합해 ‘국민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점에서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뿐 아니라,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경찰활동 영역에서는 체감안전과 관련하여 범죄 검거율이나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 등의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병행하여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내부만족도 등 주관적 성과지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체감안전도를 학술적 의미인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은 ‘사람이 범죄피해에 희생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하여 야기되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 불안 또는 공포’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¹¹⁾ 체감안전도의 개념을 범죄에 대한 불안(anxiety of crime),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성(public sensibilities towards crime)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무질서의 체감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주거

10) 유효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비교분석”, 공공기관연구센터 포커스, 2003, 2면.

11)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6, p. 164.

지역 주변의 체감안전도와 혼용하기도 한다.¹²⁾

한편, 사회지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안전지표의 경우 범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생명·신체·재산이 안전, 화재, 교통사고, 허리케인 등과 같은 불의사고, 소비자 안전, 경제적 위기 등 개인과 인구집단에 관련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¹³⁾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는 개발되지 못했다.¹⁴⁾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2014)은¹⁵⁾ 안전의 범위를 크게 범죄와 사고로 하위영역을 분류하였고,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지표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사회안전도 등), 범죄부하량(범죄발생 및 피해 등),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등),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 안전과 예방(교통사고 등의 발생 및 예방 등),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법집행의 공정성 등) 등을 세부 관심영역으로 둬으로써 범죄두려움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안전영역을 사회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는 21개 핵심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최근 잦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분야’로 성폭력, 학교폭력, 인터넷 음란물, 교통사고 등이 해당되며, 풍수해, 산불 등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그리고 지진, 원자력 사고 등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¹⁶⁾ 여기에 치안정책 분야로는 범죄, 교통사고, 법질서와

12) 최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102면.

13) 김연수·김도우, “범죄안전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2013, 304면.

14) 행정자치부, 2014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2014.

15) 통계청, www.kostat.go.kr.

16) 행정자치부, 앞의 자료, 2013.

관련한 경찰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감안전도는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 보다는 포괄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rown & Benedict(2002)의 연구는 시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역의 범죄환경 또는 범죄두려움이 경찰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대한 태도나 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¹⁷⁾ 이러한 점에서 범죄두려움 자체가 안전에 대한 체감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두려움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인 그리고 경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체감안전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체감안전도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체감안전도 조사는 치안정책의 평가 및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자료 활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체감안전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체감안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안전을 체감안전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안전 즉 범죄두려움이라는 하위범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경찰활동이 시민들의 체감안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다. 이 밖에도 체감안전에 영향

17) Brown, B. & Benedict, W. R.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fear of crime in a rural setting: utility of a geographically focused survey for police services, planning, and assessment",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1(4). 2002, pp. 275-298.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경찰청이 조사한 범죄에 대한 안전은 범죄두려움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범죄두려움은 경찰활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경찰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커지거나(이윤호, 1990: 249), 범죄두려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혀져 왔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Weitzer & Tuch, 2005). 이러한 이유로 관련기관들은 범죄안전에 대한 국민의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해 해당기관의 평가자료 또는 정책대안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경찰이 주력하였던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 30.4%에서 28.5%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히면서(경찰청, 2014) 범죄두려움을 치안관련 체감안전도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활용하였다.¹⁸⁾

또한, 범죄두려움과 경찰활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Charles Bahn(1974)는 시민들이 경찰관이나 순찰차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안전감을 느끼기 때문에(Bahn, 1974: 342; 차훈진, 2010: 341-342 재인용),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시적 경찰활동은 실제 범죄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체감 안전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차훈진, 2010: 357). 또한, 노성훈(2013)의 연구는 시민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조하면서, 범죄두려움이 체감안전도를 측정하는 치안정책의 평가지표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즉, 일반시민들의 범죄두려움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은 체감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치안관련 안전지수는 주로 미검률, 범죄피해율, 재범률 등의 증감으로 파악하고 있어, 실제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체감안전도의 측정지표와는 다를 수 있다.

한편, 시민들의 경찰 접촉경험은 경찰에 대한 인식 또는 만족도에 적어도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시민 개개인이 경찰과 접촉하는 경우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일 수 있고(Churprakobkit & Bartsch, 2001),¹⁹⁾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접촉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Churprakobkit & Bartsch, 2001; Weizer & Tuch, 2005; Skogan, 2006)²⁰⁾ 경찰과의 접촉경험은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²¹⁾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경찰과 빈번하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즉, 범죄예방 또는 피해, 교통질서 위반 또는 사고처리 기타 법질서를 단속하는 경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로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찰은 자유의 구속과 억제를 통하여 기본임무를 수행하므로 집행수단이 강제적 또는 직접적이어서 가시성이 높고,²²⁾ 실제로도 경찰의 제복은 시민의 순응과 협력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³⁾ 결국 경찰활동에 대한 높은 가시성은 시민이 보다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정도가

19) Churprakobkit, Sutham & Bartsch, Robert A., "Police performance: A Model for assessing citizens' satisfac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e attributes", *Police Quarterly* 4(4), 2001, p. 450.

20) Skogan, Wesley G., "Asymmetry in the impact of encounters with police", *Policing and Society* 16(2): 2006, pp. 99-126; Weitzer, Ronald & Tuch, Steven A., "Determinants of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6, pp. 279-297.

21)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대왕사, 2003, 98면.

22) 김영환, "경찰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경찰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2호, 2003, 100면.

23) 최선우, 앞의 책, 100면.

24) 이윤호,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245-246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찰활동의 가시성에 대한 측정을 위해 Salmi, Gronroos & Keskinen(2004: 577-587)은 차량과 도보순찰이 대물 및 대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보순찰이 범죄두려움을 감소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²⁵⁾ 마찬가지로 Lyman(2005: 122)은 정복경찰의 직접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은 시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직접적·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⁶⁾ 특히, 도보 및 자전거 순찰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시민들에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²⁷⁾ 직접적인 대민활동을 하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증가할수록 체감안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의 가시성만으로 적극적으로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 자체가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이기 때문이다. 범죄가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때 범죄발생건수 또는 범죄율이 대표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범죄율은 과장되게 인지되는 경우도 있어 이때에는 언론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²⁸⁾ 즉, 체감안전도 지표가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범죄발생건수나 범죄율에 대해서 정확

25) Salmi, S., Gronroos, M. & Keskinen, E., "The role of police visibility in fear of crime in Finland," *Policing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7(4), 2004, pp. 573-591.

26) Lyman, Michael D., *The Police: An Introduct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27) Chermak, S., McGarrell, E. & Gruenewald, J., "Media coverage of police misconduct and attitudes toward police", *Policing* 29(2), 2006, pp. 261-281; Dukes, Richard L. & Portillos, Edwardo, "Mod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olice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32(2), 2009, p. 299.

28) 김태영, "언론보도가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4대약 근절을 주축으로 한 민생치안활동-체감안전도 연계에 관한 학술 대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지방경찰청, 2014, 29면.

하게 알기 어렵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무질서 정도나 박성조·박지선(2013)의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범죄정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²⁹⁾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인식 외에 지난 1년 간 기억을 더듬어 각종 언론보도, 매체, 지역사회를 통항 범죄정보와 경찰활동에 대한 직·간접 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는 범죄의 증가 인식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김태영(2014)³⁰⁾은 체감안전도 지표가 주관적·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특성이 대표적이며, 지역별 특성의 경우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수준, 범죄취약지구, 물리적 특성, 지역소득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경찰력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찰관수, 경찰활동 건수, 활동(순찰) 형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체감안전도와 관련하여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범죄에 대한 취약성과의 연관성으로 설명한 연구들은 주로 성별, 연령에 관심을 갖고 있다.³¹⁾ 더욱이 최근에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은 범죄 취약계층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죄두려움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체감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에 따라 체감안전도의 영향정도를 달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4대

29) 박성조·박지선,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수치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범죄발생인식에 미치는 영향, 2013년 한국소통학회 봄정기학술정보 자료집, 2013.

30) 김태영, 앞의 논문.

31) 최천근, 앞의 논문, 104면.

사회악 개별 범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 개인의 체감안전도에 대한 차이는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제3장 조사설계 및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이 연구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인식수준을 바탕으로 경찰의 치안정책수립 및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에서 경찰청 치안정책 고객평단 대상의 이메일(e-mail)과 무작위 전화면접(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체감안전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Chaffe와 Choe(1980)가 고안한 ‘Random-Digit-Dialing’이라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번호별로 비례확률에 의해 일차 표집을 하고, 표집된 지역 내에서 4대의 전화번호를 건너뛰면서 대상자를 선택하여 표본을 만든다.³²⁾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에서 무응답이 나오지 않는 대상자에게만 조사를 이어가고, 무응답이 가능한 문항은 2개를 넘지 않아 결측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화면접조사의 특성상,

32) 홍성렬,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시그마프레스, 2005, 47-48면.

질문내용이 함축적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주로 모니터요원의 근무시간 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일 오후까지 집에 있는 응답자의 연령에 대한 할당표집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다음으로 설문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연령(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남, 여)이 있으며, 16개의 지방경찰청을 지역적 특성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의 행정자치부와 경찰기관의 조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청소년층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10대 연령층을 표본에 추가하였다.

다만, 이 연구가 전국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적 변수를 16개 지방경찰청으로 구분하여 표집에 사용하였으나,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즉 지역의 공식범죄발생률, 인구, 치안상황, 경제적 특성 등의 지역변수를 모두 통제하거나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체감안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³³⁾ 그리고 4대 사회악 범죄유형의 특성상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아동 및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구형태와 혼인여부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경제적 수준과 학력, 직업유형 등도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으나, 곤란한 응답의 경우 전화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한 결측자료 54건을 제외한 1,046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0.0를 사용하였고, 분석은 인구통계학적인 분포와 체감안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33) 지역변수 등을 고려한 논의는 이 연구 이후에 시행되는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T-test 와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2. 설문의 구성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4대 사회악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 두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우선 4대 사회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4대 사회악 중 최우선 근절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에 대해 느끼는 심각한 정도를 알아보고,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 정부의 치안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는 각 범죄유형별 ‘우리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안전한 정도’, ‘지난 1년 간 증감여부에 대한 생각’, ‘경찰개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수행한 체감안전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그간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경찰활동의 성과와 평가로 짐작할 수 있는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과 개입여부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체감안전의 수준을 유추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해 구성하였다.

한편 체감안전도 조사 연구들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또는 점수화한 결과가 주로 공개된다. 체감안전도와 관련한 변수를 통해 영향관계를 측정 한 최천근(2011)의 연구는 체감안전도를 범죄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범죄안전과 지역사회 체감안전 수준을 체감안전도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두려움 자체를 하나의 수준으로 체감안전이라고 측정한 것은 자료의 손실 등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체감안전도는 4대 사회악 개별 범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

는 정도로 설정하고 각 범죄에 대한 안전한 정도를 통해 범위를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체감안전에 대한 문항은 경찰청(2014) ‘치안체감도 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개별 4대 사회악 범죄에 대한 안전한 정도로 수정하였다. 여기서의 체감안전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조사한 범죄두려움과는 차이를 두었으며, 전화조사라는 한계에 따라 체감안전이라는 상위개념의 통합 질문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한 해 정부의 핵심 치안정책의 상당부분은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과 체감안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경험하는지, 또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치안상황과 조사대상자들의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은 조사의 한계로 남는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치안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난 한 해’라는 과거 기억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범죄의 증가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경찰청 치안체감도 조사에 포함된 정부 및 경찰의 대책에 관한 문항은 대부분 응답자들에게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경찰활동 및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을 수정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치안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경찰활동의 가시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시성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매체나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범죄는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³⁴⁾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4대 사회악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가정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관계 및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단, 이 연구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전화조사의 한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적 특성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 학업 수준, 직업 등과 관련한 민감한 유형의 변수는 제외하였다.³⁵⁾

마지막으로 설문항목은 4대 사회악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에 대한 범죄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인식,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예방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1점은 ‘매우 그렇다’, 5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34) Clemente, F. & Kleinman, M. B.,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 1977, pp. 519-532; Skogan, W. & Maxfield, M. G.,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1.

35) 경찰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내부자료, 2013.

최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 2012, 103-129면; Hunter, A., Symbols of incivilities: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TX, November, 1979; Moore, M. H., Trojanowicz, R. C. & Kelling, G. L., *Crime and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2,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988.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1,046명 중 남성이 453명(43.3%), 여성이 593명(56.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의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으나 고른 분포의 응답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8명(6.5%), 20대가 144명(13.8%), 30대가 175명(16.7%), 40가 279명(26.7%), 50대가 220명(21.0%) 그리고 60대 이상이 150명(15.3%)로 나타났다.

체감안전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은 조사대상에서 20대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성인 남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경우 4대 사회악 중 학교폭력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10대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일부 전화조사의 경우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로 노인층이 많은 경우가 있고, 2012년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의 응답비율이 66.7%나 차지하고 있어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³⁶⁾ 이러한 점에서, 이 조사의 성별, 연령별 비율의 분포도는 이전의 조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기혼이 724명(69.7%)이고, 미혼은 314명(30.3%)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에서는 1인 가구는 113명(10.9%)으로 1인 초과 가구 922명(88.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6개 지방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지역별 분포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인구분포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표집이 되었다.³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187명(17.9%), 경기 182명(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주지역은 40명으로 울산, 전북, 전남 지역과 함께 3.8%의 응답률을 보였다.

36) 정철우·강소영, 앞의 논문.

37) 행정자치부,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53	43.3
	여	593	56.7
	합계	1,046	100.0
연령	10대	68	6.5
	20대	144	13.8
	30대	175	16.7
	40대	279	26.7
	50대	220	21.0
	60대 이상	150	15.3
	합계	1,046	100.0
혼인상태	기혼	724	69.7
	미혼	314	30.3
	합계	1,038	100.0
가구형태	1인 가구	113	10.9
	1인 초과 가구	922	88.1
	합계	1,035	100.0
거주지역	서울	187	17.9
	부산	82	7.8
	대구	53	5.1
	인천	54	5.2
	광주	43	4.1
	대전	41	3.9
	울산	40	3.8
	경기	182	17.4
	강원	41	3.9
	충북	41	3.9
	충남	42	4.0
	전북	40	3.8
	전남	40	3.8
	경북	60	5.7
	경남	60	5.7
	제주	40	3.8
		합계	1,046

한편, 위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았다. 우선 4대 사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3.35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즉, 전반적으로는 4대 사회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대 사회악 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를 평균치로 살펴보면, 불량식품(3.67)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3.60), 성폭력(3.48), 가정폭력(3.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뚜렷하게 검증할 요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인 수치만으로 해석하자면, 전 연령층의 응답을 고려했을 때, 범죄로 인한 피해 또는 두려움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량식품 범죄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비해 우리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tion)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 중 각각의 범죄가 증가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범죄유형으로는 성폭력(2.43), 학교폭력(2.64)의 순으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2.71)과 불량식품(2.72)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범죄의 증가여부는 개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나 체감안전도와 달리, 언론보도의 빈도와 강도 또는 지역사회나 기타 공식통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두려움이 갖는 주관적 평가요소 보다는 사실적인 추측에 기인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체감안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히 범죄두려움과 체감안전을 같은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학교폭력(2.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폭력(3.02), 불량식품(3.33), 가정폭력(3.5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특징은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다기관 협력체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지속성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조사대상이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10대의 응답수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초통계량으로 살펴본 결과들은 문항에 따른 평균값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여전히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체감하는 정도는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후술하는 분석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치

내용		평균	표준편차
4대 사회악 관심도	4대 사회악 전체	3.35	.99
체감안전	성폭력	3.48	.65
	가정폭력	3.39	.82
	학교폭력	3.60	.82
	불량식품	3.67	.87
지난 1년간 범죄증가 인식	성폭력	2.43	.83
	가정폭력	2.71	.77

	학교폭력	2.64	.87
	불량식품	2.72	.85
적극적 경찰활동 인식	성폭력	3.02	.91
	가정폭력	3.51	.91
	학교폭력	2.98	.93
	불량식품	3.33	.92

제2절 분석 결과 및 논의

1. 4대 사회악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

가.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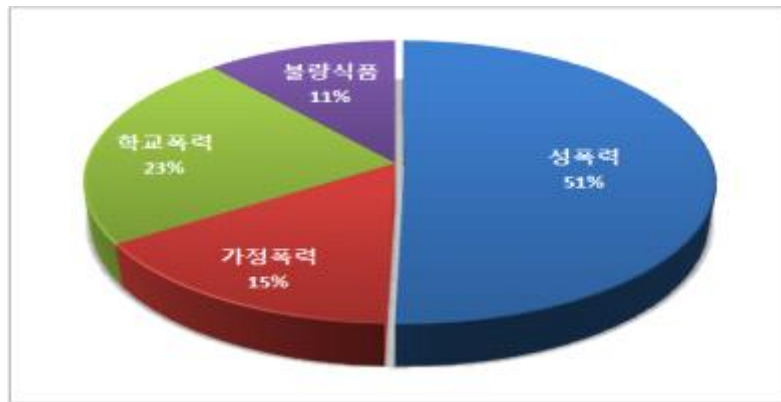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4대 사회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중에서도 경찰이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 4대 사회악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성폭력이 50.5%(528명), 학교폭력 22.8%(239명), 가정폭력 15.4%(161명) 그리고 불량식품 11.3%(118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성폭력 범죄가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는 2013년 행정자치부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의 조사에서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한 결과와 일치한다.³⁸⁾ 즉, 우리국민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조사기관을 달리하여도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높다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치안상황을 설명해 준다.

38) 행정자치부, 앞의 자료, 2013.

<표 3>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의 우선순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빈도(명)	528	161	239	118
비율(%)	(50.5%)	(15.4%)	(22.8%)	(11.3%)



<그림 1>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의 우선순위 분포

다음으로 4대 사회악 중 최우선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분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45%(204명)과 여성 54.6%(324명) 모두가 성폭력을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분야로 지목했고, 다음으로는 남성 25.8%(117명)과 여성의 20.6%(122명)가 학교폭력을 지목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이미 가장 심각한 범죄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범죄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불량식품(16.8%)이 가정폭력 (12.4%)보다 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정폭력 (17.7%)이 불량식품(16.8%) 보다 우선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유형으로 지목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배우자 중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심각성에서 남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령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성폭력에 대한 근절이 가장 우선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10대의 경우는 성폭력(38.2%)와 학교폭력(38.2%)이 같은 수준에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우선순위 비중이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는 성폭력 다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24.6%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우리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중 미혼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20대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교폭력이 일반 다른 연령층이 느끼는 성폭력의 수준과 유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에서는 불량식품이 33.8%로 성폭력의 32.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폭력에 대한 범죄문제보다는 생명과 신체에 유해한 식품관련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에 대한 수준이 피해의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를 드러내는 기존의 조사와 달리 10대의 인식이 포함된 결과라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불량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4> 성별 및 연령별 경찰 4대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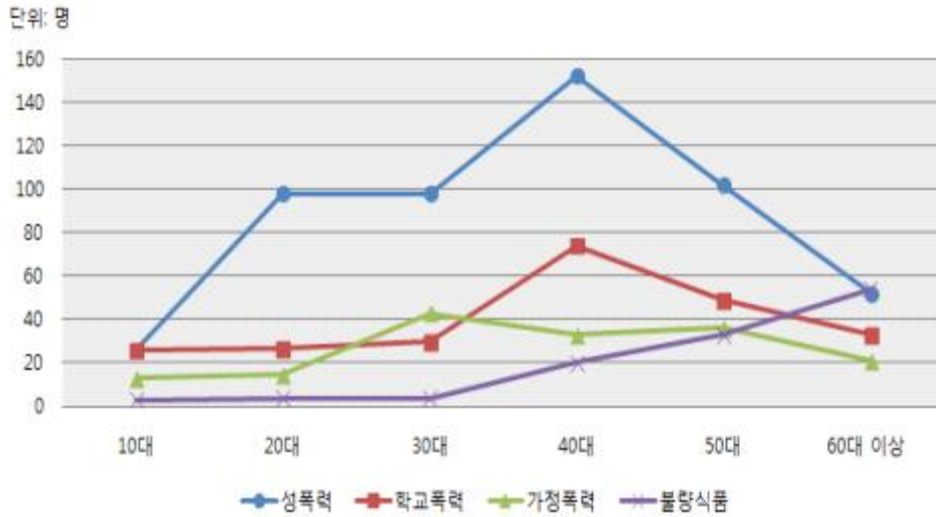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성 별	남성	204 45.0%	117 25.8%	56 12.4%	76 16.8%
	여성	324 54.6%	122 20.6%	105 17.7%	42 7.1%
	합계	528 50.5%	239 22.8%	161 15.4%	118 11.3%
연 령	10대	26 38.2%	26 38.2%	13 19.1%	3 4.4%
	20대	98 68.1%	27 18.8%	15 10.4%	4 2.8%
	30대	98 56.0%	30 17.1%	43 24.6%	4 2.3%
	40대	152 54.5%	74 26.5%	33 11.8%	20 7.2%
	50대	102 46.4%	49 22.3%	36 16.4%	33 15.0%
	60대 이상	52 32.5%	33 20.6%	21 13.1%	54 33.8%
	합계	528 50.5%	239 22.8%	161 15.4%	118 11.3%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그림 2> 성별 및 연령별 우선순위 분포



다음으로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라 최우선으로 근절해야할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자 모두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의 경우 기혼(47.3%)보다는 미혼자(57.0%)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경우는 미혼(21.3%) 보다는 기혼(23.7%)자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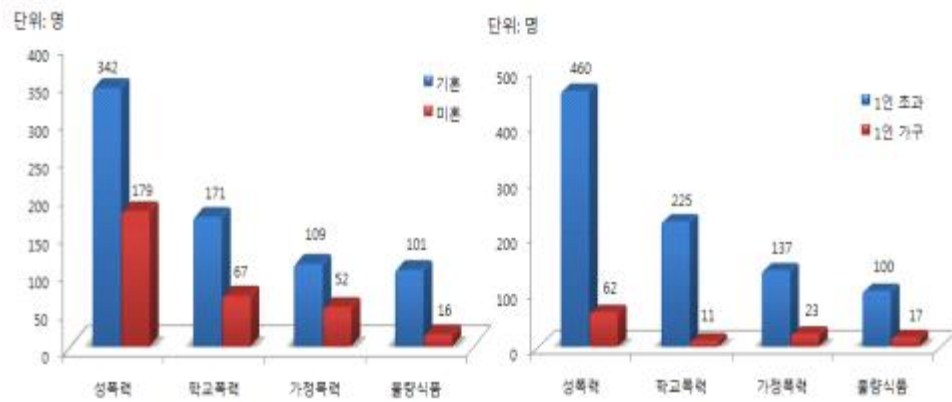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형태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순으로 심각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1인 가구의 응답자는 가정폭력(9.7%)보다는 불량식품(15.0%)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1인 초과 가구에서는 가정폭력(15.5%)이 불량식품(11.3%)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1인 초과 가구의 경우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체감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5>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인식

(단위: 명/ 비율)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혼인 상태	기혼	342 47.3%	171 23.7%	109 15.1%	101 14.0%
	미혼	179 57.0%	67 21.3%	52 16.6%	16 5.1%
	합계	521 50.2%	238 23.0%	161 15.5%	117 11.3%

가구 형태	1인 가구	62 54.9%	11 20.4%	23 9.7%	17 15.0%
	1인 초과 가구	460 49.9%	225 24.4%	137 14.9%	100 10.8%
	합계	522 50.4%	236 22.8%	160 15.5%	117 11.3%



<그림 3>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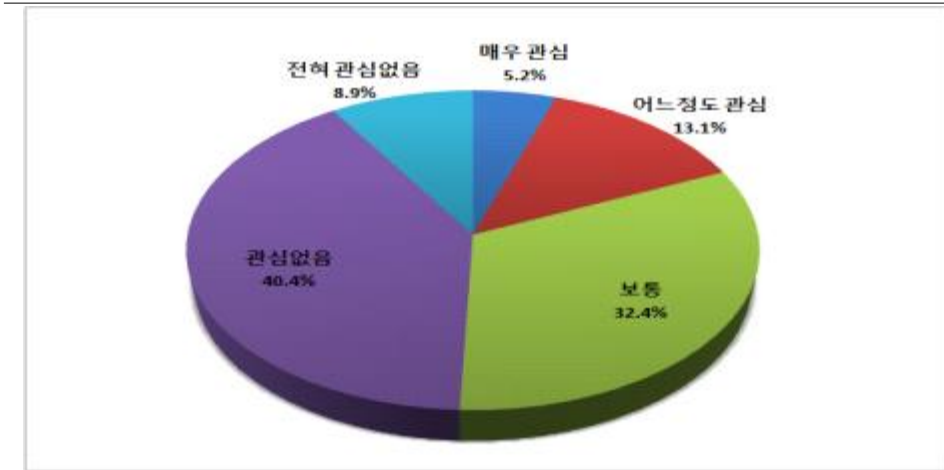
나.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도

4대 사회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전국 1,0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1명(18.3%)만이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무려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16명(49.3%)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치안정책과 경찰활동의 상당부분이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낮은 점에 대해서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이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향후 체감안전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매우 관심	어느 정도 관심	보통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빈도	54	137	339	423	93
(%)	(5.2%)	(13.1%)	(32.4%)	(40.4)	(8.9%)



〈그림 3〉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분포

다음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서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3.14)보다는 여성(3.51)의 관심도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관심도 역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응답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각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대(3.66)와 30대(3.60)에서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0대(3.10)와 60대 이상(3.21)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별 차이에서 청·장년층에서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한편,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응답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혼자(3.58)가 기혼자(3.24)보다 약간 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4대약 인식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	3.14	1.09	T	.000
	여	3.51	.87	-6.07	
연령				F	.000
	10대	3.51	.86	9.73	
	20대	3.66	.84		
	30대	3.60	.90		
	40대	3.27	1.09		
	50대	3.10	.98		
	60대 이상	3.21	.99		
혼인상태	기혼	3.24	1.02		T
	미혼	3.58	.86	-5.03	
가구형태	1인 가구	3.20	1.03	T	.110
	1인 초과	3.36	.99	-1.60	

2.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이 부분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체감하는 4대 사회악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의 증가에 대한 인식,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 및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을 아래와 같은 응답 결과에 따라 설명하였다.

가. 4대 사회악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안전도

4대 사회악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별로 ‘우리사회 전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전혀 안전하지 않다’와 ‘안전하지 않다’의 부정적 응답과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의 긍정적 응답은 각각 합쳐서 그래프로 나타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성폭력에 대해서는 55.3%, 가정폭력은 46.3%, 학교폭력은 60.0%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59.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긍정적인 응답은 성폭력은 단지 7.3%만이, 가정폭력은 13.4%, 학교폭력은 9.3% 그리고 불량식품은 9.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응답 중에서 체감안전의 수준이 낮은 학교폭력과 불량식품 그리고 성폭력에 비해 가정폭력은 안전수준의 경우 보통이 40.3%, 안전하다는 응답은 13.4%로 가정폭력에 대한 체감안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체감안전도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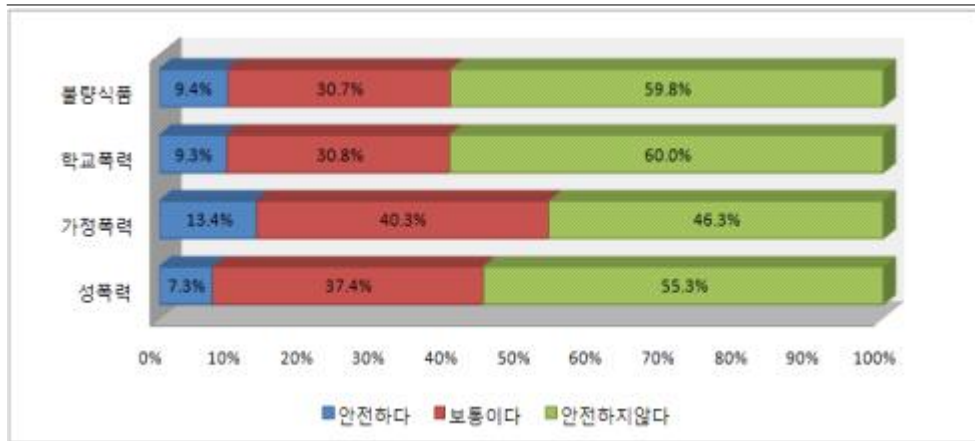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4대 사회악의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tion)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불량식품 범죄가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체감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의 다른 유형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음에도, 국민이 일상생활 내에서 범죄를 당할까봐 염려하는 정도에 비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8> 4대 사회악 유형에 따른 범죄안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성폭력	4 0.4%	63 6.9%	344 37.4%	505 55.0%	3 0.3%
가정폭력	9 0.9%	130 12.5%	420 40.3%	415 39.9%	67 6.4%
학교폭력	9 0.9%	88 8.4%	321 30.8%	518 49.7%	107 10.3%
불량식품	3 0.3%	95 9.1%	320 30.7%	451 43.3%	172 16.5%



〈그림 3〉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분포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4대 사회악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 차이분석의 결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가구형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은 여성이(3.60)이 남성(3.33)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도 여성이(3.49) 남성(3.24)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며, 전반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령별로는 성폭력을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정폭력은 50대(3.49), 30대(3.48), 40대(3.44) 순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30대~50대 층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청소년이나 60대 이상의 노인계층 보다

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의 경우 30대(3.74)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층인 10대(3.22)에서는 오히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층에서도 학교폭력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있으나, 오히려 다른 성인들의 응답에서 더 안전하지 않게 체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단 간 차이만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범죄문제를 접하게 되는 청장년층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 본다. 또한, 불량식품의 경우 60대 이상(3.94)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3.72), 40대(3.72) 등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순차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폭력과 불량식품에서만 그 차이를 보이는데, 성폭력은 기혼자(3.51)가 미혼자(3.40)보다 조금 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량식품의 경우도 기혼자(3.74)가 미혼자(3.48)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4대악 체감안전도 차이분석

구분		4대악 체감안전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별	남	3.33(.69)	3.24(.85)	3.57(.85)	3.61(.91)
	여	3.60(.59)	3.49(.77)	3.62(.79)	3.71(.86)
	T	-6.55	-4.98	-.94	-1.88
	p-value	.000	.000	.347	.061
연령	10대	3.31(.71)	2.91(.79)	3.22(.90)	3.47(.84)
	20대	3.42(.71)	3.35(.84)	3.69(.92)	3.47(.96)
	30대	3.57(.59)	3.48(.81)	3.74(.73)	3.54(.81)
	40대	3.52(.60)	3.44(.79)	3.64(.77)	3.70(.86)
	50대	3.46(.64)	3.49(.78)	3.56(.81)	3.72(.86)
	60대 이상	3.47(.70)	3.28(.84)	3.52(.82)	3.94(.79)
	F p-value	1.97 .080	6.77 .000	5.03 .000	6.42 .000
혼인 상태	기혼	3.51(.63)	3.42(.80)	3.61(.78)	3.74(.85)
	미혼	3.40(.69)	3.31(.84)	3.58(.87)	3.48(.88)
	T	2.46	1.91	.62	4.56
	p-value	.014	.056	.537	.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3.47(.71)	3.46(.82)	3.64(.78)	3.66(.81)
	1인 초과	3.48(.64)	3.37(.81)	3.60(.81)	3.67(.88)
	T	-.09	1.06	.57	-.09
	p-value	.929	.289	.569	.932

나. 4대 사회악에 대한 범죄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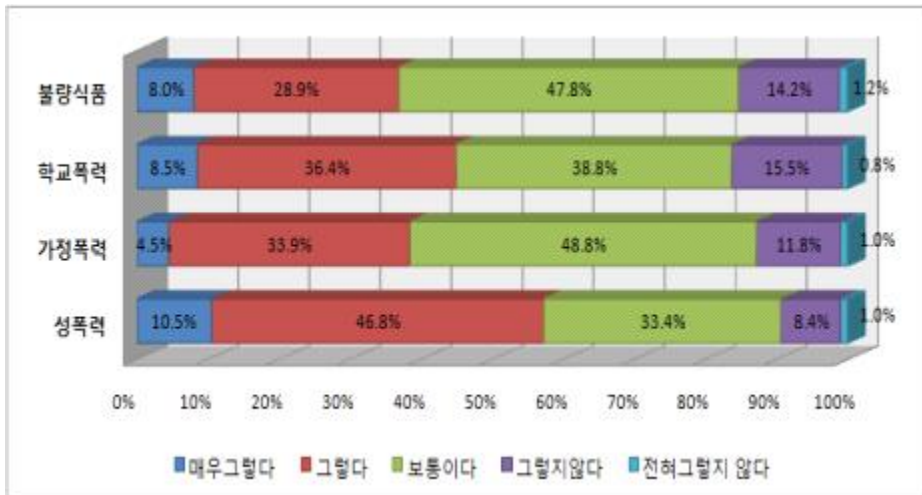
여기서는 4대 사회악에 대한 집중 치안활동을 전개한 지난 1년 동안의 일정 범위를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체감을 통하여 범죄의 증가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공식적인 범죄발생건수를 직접 인식하는 경우 보다는 언론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일정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이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데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은 57.3%, 가정폭력은 46.5%, 학교폭력은 44.9%, 불량식품은 36.9%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의 증가여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8%, 47.8%로 나타났으나, 모든 범죄유형에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1% 내외에 불과했다. 즉,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대부분 4대 사회악이 지난 1년 간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0> 4대 사회악에 따른 범죄 증가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폭력	109 10.5%	488 46.8%	348 33.4%	88 8.4%	10 1.0%
가정폭력	46 4.5%	349 33.9%	503 48.8%	122 11.8%	10 1.0%
학교폭력	89 8.5%	379 36.4%	404 38.8%	162 15.5%	8 0.8%
불량식품	83	299	495	147	12
	8.0%	28.9%	47.8%	14.2%	1.2%



<그림 4> 4대 사회악 범죄 증가 인식 분포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남성(2.55)보다는 여성(2.33)이 약간 더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에서도 여성(2.65)이 남성(2.78) 보다는 약간 더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과 불량식품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주로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부분에서 지난 1년 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느끼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폭력의 경우 20대(2.28)와 30대(2.33)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했다고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 1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순으로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학교폭력의 경우는 30대(2.40), 20대(2.49)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난 한 해 학교폭력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10대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층의 체감도가 20, 3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체감안전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학교폭력과 불량식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에서는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상대적으로 지난 한 해 해당 범죄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형태별로는 4대 사회악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4대악 범죄증가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4대악 범죄증가 인식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별	남	2.55(.80)	2.78(.77)	2.67(.89)	2.68(.85)
	여	2.33(.83)	2.65(.76)	2.61(.86)	2.74(.85)
	T	4.37	2.71	1.11	-1.12
	p-value	.000	.007	.270	.258
연령	10대	2.57(.82)	2.85(.76)	2.62(1.00)	2.79(.73)
	20대	2.28(.79)	2.67(.84)	2.49(.90)	2.82(.83)
	30대	2.33(.80)	2.63(.76)	2.40(.80)	2.81(.75)
	40대	2.37(.78)	2.67(.73)	2.62(.85)	2.68(.88)
	50대	2.48(.86)	2.79(.74)	2.74(.86)	2.66(.92)
	60대 이상	2.63(.88)	2.74(.82)	2.92(.83)	2.64(.86)
	F p-value	4.29 .001	1.57 .165	7.53 .000	1.52 .180
혼인 상태	기혼	2.44(.83)	2.70(.77)	2.69(.86)	2.68(.86)
	미혼	2.38(.81)	2.71(.77)	2.50(.88)	2.81(.80)
	T	1.08	-.23	.30	.006
	p-value	.279	.082	.001	.026
가구 형태	1인 가구	2.42(.81)	2.62(.70)	2.59(.87)	2.67(.93)
	1인 초과	2.42(.83)	2.72(.78)	2.65(.87)	2.73(.84)
	T	-.10	.45	.91	.07
	p-value	.918	.222	.520	.524

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4대 사회악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따라 적극적인 경찰활동 또는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대 사회악에 대한 치안정책은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빈도를 높이는 등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가시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체감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4대 사회악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발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학교폭력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은 24.80%, 불량식품이 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13.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정폭력은 56.2%, 불량식품이 43%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어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에 대한 경찰활동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폭력의 경우에서만 유일하게 긍정과 부정의 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4대 사회악 근절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치안정책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수행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경찰정책의 효과성은 단기간 내에 수치상으로 표현되는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유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화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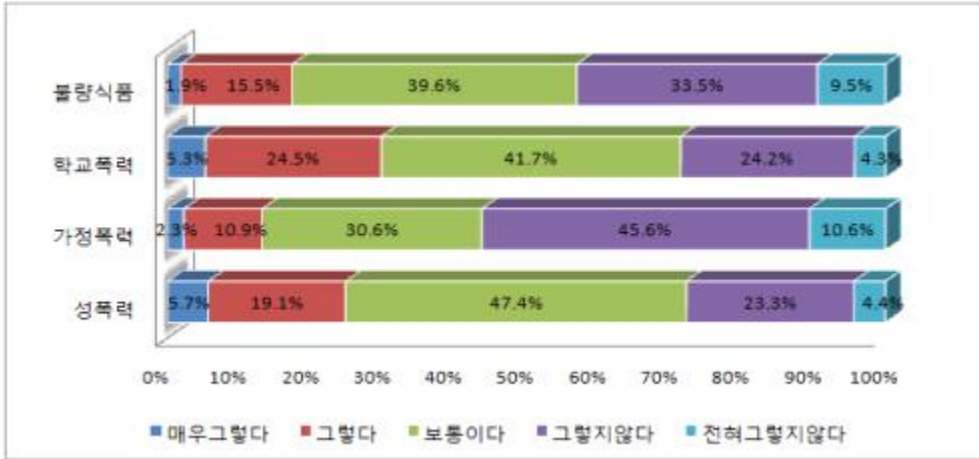
특히, 경찰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인 대민활동을 하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증가할수록 체감안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따

라(정철우·강소영, 2014; Chermak et al., 2006; Dukes & Portillos; 2009: 299), 학교폭력에 대한 가시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체감안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표 12>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의 적극성

(단위: 명/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폭력	59 5.7%	198 19.1%	492 47.4%	242 23.3%	46 4.4%
가정폭력	24 2.3%	113 10.9%	317 30.6%	473 45.6%	110 10.6%
학교폭력	55 5.3%	256 24.5%	435 41.7%	252 24.2%	45 4.3%
불량식품	20 1.9%	159 15.5%	407 39.6%	345 33.5%	98 9.5%



<그림 5> 4대 사회악에 따른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했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가구형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의 차이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범죄유형에서 경찰활동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성폭력의 경우 30대(3.26)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40대(3.14), 20대(3.09), 50대(3.00), 60대 이상(2.77), 10대(2.3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30대(3.82)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2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50대, 60대 이상, 10대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학교폭력은 30대(3.21)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고,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은 30대(3.44)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0대, 50대, 20대, 1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30대에서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40대와 20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회활동의 경험빈도가 높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청·장년 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반면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경찰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빈도가 높은 10대 청소년층에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4대 사회악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활동 및 경찰의 개입정도와 관련하여 혼인상태나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의 적극성

구분		4대악 경찰활동의 범죄예방활동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별	남	2.84(.95)	3.39(.97)	2.90(.95)	3.28(.94)
	여	3.16(.86)	3.60(.87)	3.04(.92)	3.37(.89)
	T	-5.64	-3.72	.25	-1.57
	p-value	.000	.000	.020	.116
연령	10대	2.38(.79)	2.87(.91)	2.33(.81)	3.15(.90)
	20대	3.09(.93)	3.67(.86)	3.14(.94)	3.30(.97)
	30대	3.26(.80)	3.82(.78)	3.21(.80)	3.44(.79)
	40대	3.14(.81)	3.66(.82)	3.06(.90)	3.42(.86)
	50대	3.00(.99)	3.47(.87)	2.99(.95)	3.38(.98)
	60대 이상	2.77(.95)	3.11(.99)	2.70(.97)	3.09(.96)
	F p-value	13.50 .000	21.70 .000	13.44 .000	3.87 .002
혼인 상태	기혼	3.05(.92)	3.51(.89)	2.97(.93)	3.35(.91)
	미혼	2.96(.88)	3.53(.94)	2.99(.94)	3.30(.92)
	T	1.47	.11	.89	.886
	p-value	.143	.710	.774	.431
가구 형태	1인 가구	3.03(.87)	3.57(.92)	3.02(.94)	3.28(.89)
	1인 초과	3.02(.92)	3.31(.90)	2.97(.93)	3.34(.92)
	T	.09	.63	.50	-.71
	p-value	.927	.527	.620	.481

제4장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

제1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 4대 사회악에 대한 범죄화인식 및 양방향 경찰활동 제고

지난 한 해 4대 사회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과 경찰의 치안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 사회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경찰활동이 미흡하거나 경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체감안전도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한 안정행정부(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 ‘예방교육 부족 및 성, 학교폭력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물론 체감안전도 수준이 낮은 이유를 근거로 해결점을 찾고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다고 해서 체감안전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들은 다수의 국민들이 치안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거나 범죄화인식이 여전히 느린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의 방향이 다소 다를 수도 있

으며, 궁극적으로는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도했던 노력들이 이를 대변해준다. 대표적으로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정책들은 다양한 시도 끝에 국책사상에 기반 한 소년사법을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 사회가 소년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의 회복, 가해자-피해자의 재통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체감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감안전도 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인 ‘재범방지 노력의 미흡’하다는 응답을 보면, 시민들이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경찰의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가 2013년 11월말 전년 동기간 대비 93.4%나 증가하였고, 전년도 30%를 상회하던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률은 2013년 7월말 기준 13.9%로 큰 폭으로 하락³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성범죄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다른 범죄예방활동 보다도 직접적으로 경찰과 접촉 할 수 있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정폭력의 경우 여전히 범죄화 인식이 미약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의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판단보다는, 그만큼 폭력과

39) 경찰청, 내부자료, 2014.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거나,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의 적극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범죄유형이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이라는 점에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적극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범죄화 인식이 더디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동안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가정 내 발생하는 일들이 범죄로 인식해가는 동안 가정폭력에 대해 한동안은 더 불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체감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은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활동의 일방적인 적극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범죄화 인식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일반 시민들도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면서 양방향 치안활동에 대한 대안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이러한 양방향적 경찰활동은 학교폭력 분야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⁴⁰⁾ 최근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⁴¹⁾ 미국경찰의 D.A.R.E.(Drug

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큰 역할을 해 온 학교전담경찰관 및 117신고센터의 적극적인 양방향 치안활동은 △ 117 상담에 만족한다 81.5%, 문제해결에 도움됐다 81.5% (2013. 10, 신고자 340명), 학교전담경찰관 알고있다 88%, 필요하다 95%, 만족한다 76% (2013. 11, 학생·교사 등 4,246명)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경찰관이 학교 내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과 훈련을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다.⁴²⁾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은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청소년의 사법참여를 유도하면서 법의식을 강조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⁴³⁾ 기존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아닌 교사나 부모의 합의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화해할 기회가 적어 근본적인 폭력에 대한 화해에 한계가 있었는데, 학생자치법정을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에도 적용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 또한 양방향 경찰활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⁴⁾ 이러한 양방향적 경찰활동을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폭력근절을 위한 인식의 확산과 경찰개입에 대한 강도를 높인다면 국민의 체감안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요

-
- 41) 이용혁·강소영,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유형에 따른 인식조사”, 한국경찰연구, 2013, 제12권 제3호.
- 42)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은 정복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10주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에 대처하는 방법, 학생들이 자기통제력을 길러 스트레스와 주위의 압박을 어떻게 잘 해소하는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책임감(responsibility),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마약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법(drug avoidance information), 모험과 그 결과(risk & consequences), 친구로부터의 압박(peer pressure), 스트레스(stress),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confident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기(listening), 집단따돌림(bullying), 주위를 돕는 법(helping others), 도움을 청하는 법(getting help)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운·이창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2012.
- 43)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법원 참고, <http://www.hcclerk.org/home/teen-court.aspx>.
- 44)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위반 학생에게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법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http://www.spo.go.kr/spo/index.jsp>.

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찰활동이 사전 예방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처벌·재범방지 노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기적 일제 점검 등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사후지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원스톱지원센터 확대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사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117신고센터 접수 신고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13년 1.3%에 불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체계적 전담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단이나, 가해자 격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설 마련 및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해 안전하게 느끼는 것에 비해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석결과에 따라 단속 및 후속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정책 초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일부 감정회신 지연 및 압수물 처리 등 사후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2. 범죄취약계층 지향적 경찰활동의 전개

체감안전도에 대한 성별 차이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체감안전도가 낮은 이유는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다수의 연구들이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육체적·사회적으로 범죄피해에 취약성을 갖는 계층일수록 범죄두려움을 크게 느낀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범죄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Ferraro, 1992; Taylor & Hale, 1986),⁴⁵⁾ 실제로도 여성은 남성보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⁴⁶⁾

또한, Catalano(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과 폭력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노인은 범죄자에게 무기력한 표적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젊은 층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⁴⁷⁾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증가한다는 외국의 연구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젊은 층의 범죄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⁴⁸⁾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20대와 30대인 젊은 층에서 4대 사회악에 대한 안전이나 범죄증가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치안환경의 변화가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12년 1인 가구 비율은 23.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 중 19.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비율은 66.6%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가구주는 미혼(1.6%), 사별(0.2%), 이혼(1.6%) 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예방 전략은 우선 범

45) 최천근, 앞의 논문, 2011.

46) Titterington Victoria, "A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gender inequality and female homicide victimization", *Sociological spectrum* 26, 2006, pp. 205-231.

47) Catalano Shannan, 「Criminal Victimization, 2006」,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6.

48) 김성언,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쟁점과 경험적 탐색",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393-426면; 장안식 외,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차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 381-394면.

죄취약지역, 계층 등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2014)에 따르면, 강도와 강간·강제추행의 발생시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두 범죄의 구성요건과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심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체포의 가능성이 낮고 감시체계가 소홀한 장소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범죄기회의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 성폭력의 범죄취약지역, 시간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의 강화로 강도범죄와 더불어 감소한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의 효과도 높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⁴⁹⁾ 즉, 범죄취약계층에서 주로 노출되는 범죄유형, 범죄발생 지역, 시간 등을 고려한 범죄분석과 이에 따른 순찰활동의 변화, 감시체계의 강화 및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같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5대 범죄가 소폭의 증감을 유지하는데 비해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등 대상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2014)에 따르면 5대 범죄에 대한 ARIMA분석 결과 성범죄의 증가가 예측되었고, 카메라 촬영 및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우려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신고율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 재범방지 및 사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⁵⁰⁾ 성범죄

49)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2014, 106-107면.

50) 법무부 국정감사자료(2013)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2008년 5.56%에서 2012년 10.6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신상정보가 법무부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성범죄자 정보를 접할 수 없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대상자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와 경찰이 동시에 받아보는 등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신상정보 접수 및 등록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 취약한 여성,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치안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3. 치안정책의 지속성, 전문성 강화

이 연구의 전반적인 자료의 분석결과 특징적인 점은 지금까지 경찰청의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된 10대 연령층의 인식에서 나타났다. 우선 4대 사회악 중에서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하는 분야로 모든 계층이 성폭력을 지목했는데, 10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같은 수준에서 최우선 순위 분야로 지목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범죄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 주로 20대와 30대 층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10대는 학교폭력을 3순위 정도에서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성별, 연령별 인식 차이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에 비해, 10대에서 학교폭력의 경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10대 연령층의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경찰활동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시사하는 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가시적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치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은 대부분 순찰활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¹⁾ 그 이유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주로 순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일반시민이 경찰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접촉의 빈도보다는 경찰활동의 내용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Weizer & Tuch, 2005; Skogan, 2006). 즉, 단순히 경찰활동의 가시성 증가만으로 시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활동을 지향해야 비로소 체감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⁵²⁾ 따라서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불성실한 경찰관의 근무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예컨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교육부와 사법기관뿐 아니라 관계부처합동으로 대대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학교나 청소년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보다 친밀한 경찰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피부로 실감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계층 역시 10대 청소년층이라는 점이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이다. 정책 초기에는 4대 사회악 분야별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객관지표들의 가시적인 수치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⁵⁴⁾ 그럼에도

51) Lyman, Michael D., *The Police: An Introduct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Salmi, Chermak, S., McGarrell, E. & Gruenewald, J., “Media coverage of police misconduct and attitudes toward police”, *Policing* 29(2), 2006, pp. 261-281; Dukes, Richard L. & Portillos, Edwardo, “Mod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olice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32(2), 2009, pp. 297-318; 이윤희, 앞의논문, 최천근, 앞의 논문.

52) Inness, M., *The Reassurance Function*, *Policing*, 1(2), 2006, pp. 132-141.

53) 임만석, “4대 사회악 근절활동과 체감안전도 연계성 강화방안”, 4대악 근절을 주축으로 한 민생치안활동-체감안전도 연계에 관한 학술 대심포지엄 자료집, 2014, 69면.

불구하고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사후 지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경찰관 1인당 16.7개교 담당으로 인한 실질적 예방활동의 한계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성 결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단 부재 등 비표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시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은 순찰활동이나 홍보 및 전담시스템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즉, 전담체계를 증설하기 보다는 담당업무에 집중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범죄율과 체감안전도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4) * 분야별 전담체계: 학교전담경찰관 증원(167명),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발대(208명), 불량식품 전담수사팀 설치(270개),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294명) 등.

* '12년 대비 분야별 지표: 성폭력 미검률 28%↓, 성폭력 재범률 19%↓,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78%↓, 가정폭력 재범률 63%↓ 등.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1. 체감안전도 조사의 시사점 및 한계

이 연구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표본의 선정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등을 토대로 그 동안 경찰청에서 수행한 조사와의 차이점을 발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구체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른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의 조사특성상 무작위 전화면접방법이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유의미한 결과 값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치안정책 또는 평가의 근거자료가 마련되는데, 행정자치부는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산출지표(output measure)에 해당하는 4대악 분야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각 지표에 대한 감소 수치를 목표로 정해 시행하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국민 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하여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산출지표는 범죄발생의 감소 등과 같은 정량지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감안전도의 향상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⁵⁵⁾ 즉, 체감안전도는 범죄두려움, 가시적 경찰활동 등 주관적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체감안전에 미치는 다양한 요

55) 임만석, 앞의 논문, 53-55면.

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경찰기관은 성과지표인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지수를 각 지방청 또는 경찰서별 평균으로 나타난 종합순위를 통해 해당기관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⁵⁶⁾ 이를 통해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체감안전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도구 없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온 방법에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의 표집문제 즉, 경찰청에서 주로 수행하는 전화조사는 주로 조사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일 오전부터 오후 시간대에 일반 가정 내 통화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무작위 전화 설문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작위 표집으로 조사할 경우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부분 저하된다. 이 연구에서도 가구형태에 따른 집단 간 표본의 크기로 인해 차이분석은 전 분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뿐만 아니라, 전화조사는 최대한 함축적인 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응답해야하기 때문에 문항 수에 대한 제한이 있고, 질문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알려지고는 있으며,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분석해야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들을 검토·검증하지 않은 채 기관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과도하게 많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부분이다.

56) 4대 사회악 분야별 객관적 성과지표는 성폭력 사범 미검률과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사범 재범률과 사건 발생 시 보호조치율, 불량식품에 대한 체감안전지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임만석, 앞의 논문, 53-54면.

따라서 향후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해서는 표집방법을 개선하고, 질문문항에 대하여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구상하는 등 조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결과들을 단순히 수치를 통해 표면적으로 제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지역적, 공식범죄율 등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통한 결과의 제시하고, 이들 특성 중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후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결론

이 연구는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치안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체감안전도 조사가 공공기관에 의해 조사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는 정보제공 수준에서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체감안전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치안정책방향에 대하여 기존의 조사연구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정도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반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 여성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남성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이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점도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국외 연구들과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만 일치하였는데, 범죄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두려움보다는 식품안전과 같이 모든 연령층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젊은 층의 범죄두려움 수준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이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화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조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경찰활동에 대한 응답 중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에서 부각되는 치안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가시적 경찰활동이 체감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4대 사회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화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방향 경찰활동을 유도하는 대안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된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계층에 집중된 경찰활동을 다양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범관리나 사후관리 강화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에 따라 모든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치안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역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국민안전지수’를 개발·공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계층, 즉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전지수는 지역별로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여부를 비교·분석함에 따라 안전위협 요인을 근

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지수를 포함한 치안관련 체감안전도 조사도구의 개발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상운·이창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2012.
- 김성언,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쟁점과 경험적 탐색,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 김연수·김도우, “범죄안전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2013.
- 김영환, “경찰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경찰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2호, 2003.
- 김태영, “언론보도가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4대약 근절을 주축으로 한 민생치안활동-체감안저도 연계에 관한 학술 대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지방경찰청, 2014.
- 김현숙, “부정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3.
- 박성조·박지선,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수치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범죄 발생인식에 미치는 영향, 2013년 한국소통학회 봄정기학술정보 자료집, 2013.
- 유효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비교분석”, 공공기관연구센터 포커스, 2003.

- 이용혁·강소영,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유형에 따른 인식조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3호, 2013.
- 이윤희,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 임만석, “4대 사회악 근절활동과 체감안전도 연계성 강화방안”, 4대악 근절을 주축으로 한 민생치안활동-체감안전도 연계에 관한 학술대심포지엄 자료집, 2014.
- 장안식 외,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차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
- 정철우·강소영,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14.
-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대왕사, 2003.
- 최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_____,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 2012.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2014.
- 홍성렬,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시그마프레스, 2005.

2. 국외 문헌

Brown, B. & Benedict, W. R.,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fear

of crime in a rural setting: utility of a geographically focused survey for police services, planning, and assessment”,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1(4). 2002.

Catalano Shannan, 「Criminal Victimization, 2006」,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6.

Chermak, S., McGarrell, E. & Gruenewald, J., “Media coverage of police misconduct and attitudes toward police”, *Policing* 29(2), 2006.

Cheurprakobkit, Sutham & Bartsch, Robert A., “Police performance: A Model for assessing citizens' satisfac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e attributes”, *Police Quarterly* 4(4), 2001.

Clemente, F. & Kleinman, M. B.,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 1977.

Dukes, Richard L. & Portillos, Edwardo, “Mod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olice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32(2), 2009.

Dukes, Richard L. & Portillos, Edwardo, “Mod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olice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32(2), 2009.

Hunter, A., Symbols of incivilities: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TX, November, 1979.

Inness, M., The Reassurance Function, *Policing*, 1(2), 2006.

- Lyman, Michael D., *The Police: An Introduct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 Lyman, Michael D., *The Police: An Introduct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Salmi, Chermak, S., McGarrell, E. & Gruenewald, J., “Media coverage of police misconduct and attitudes toward police”, *Policing* 29(2), 2006.
-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6.
- Moore, M. H., Trojanowicz, R. C. & Kelling, G. L., *Crime and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2,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989.
- Ostrowsky, Michael K. & Steven F. Messner.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5), 2005.
- Salmi, S., Gronroos, M. & Keskinen, E., “The role of police visibility in fear of crime in Finland,” *Policing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7(4), 2004.
- Skogan, W. & Maxfield, M. G.,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1.
- Skogan, Wesley G., “Asymmetry in the impact of encounters with police”, *Policing and Society* 16(2): 2006, pp. 99-126; Weitzer, Ronald & Tuch, Steven A., “Determinants of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6.

Titterington Victoria, “A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gender inequality and female homicide victimization”, *Sociological spectrum* 26, 2006.

3. 기타

경찰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내부자료, 2013.

법무부, 국정감사요구자료, 2013.

행정자치부, “4대약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보도자료, 2013.

_____, 2014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2014.

_____ 홈페이지, www.mospa.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spo/index.jsp>.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법원 홈페이지,
<http://www.hcclerk.org/home/teen-court.aspx>.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부 록

1.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

<표 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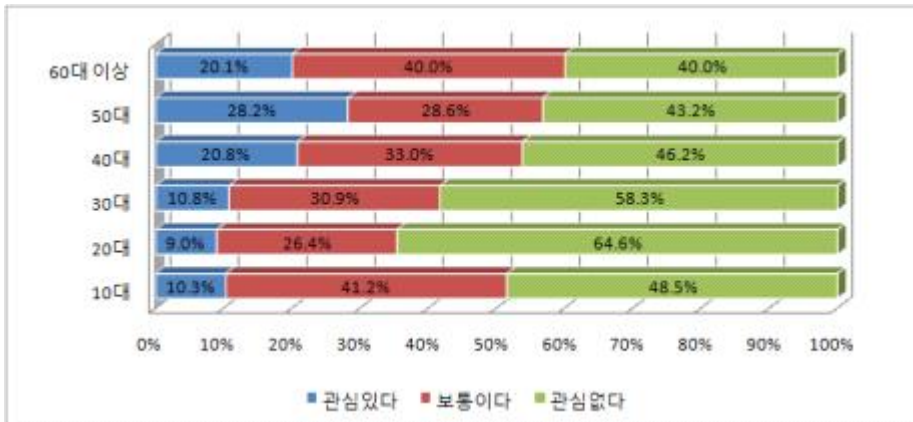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 관심	어느정도 관심	보통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성 별	남성	42 9.3%	72 15.9%	162 35.8%	135 29.8%	42 9.3%
	여성	12 2.0%	65 11.0%	177 29.8%	288 48.6%	51 8.6%
	합계	54 5.2%	137 13.1%	339 32.4%	423 40.4%	93 8.9%
연 령	10대	0 0.0%	7 10.3%	28 41.2%	24 35.3%	9 13.2%
	20대	2 1.4%	11 7.6%	38 26.4%	76 52.8%	17 11.8%
	30대	3 1.7%	16 9.1%	54 30.9%	77 44.0%	25 14.3%
	40대	16 5.7%	42 15.1%	92 33.0%	110 39.4%	19 6.8%
	50대	23 10.5%	39 17.7%	63 28.6%	83 37.7%	12 5.5%
	60대 이상	10 6.3%	22 13.8%	64 40.0%	53 33.1%	11 6.9%
	합계	54 5.2%	137 13.1%	339 32.4%	423 40.4%	93 8.9%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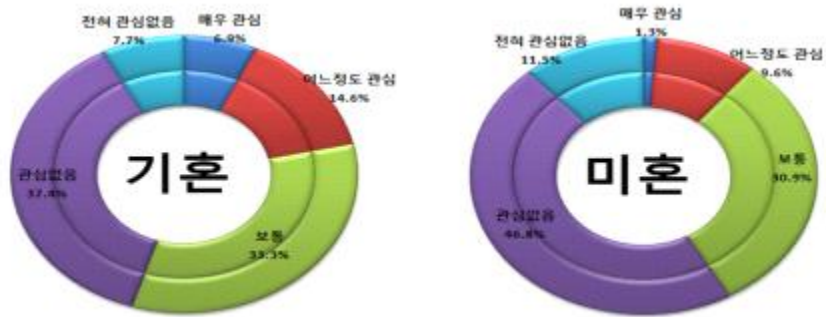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및 연령별 4대약에 대한 관심

〈표 2〉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관심 정도

(단위: 명/ 비율)

		매우 관심	어느정도 관심	보통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혼인 상태	기혼	50 6.9%	106 14.7%	241 33.2%	271 37.5%	56 7.7%
	미혼	4 1.3%	30 9.6%	97 30.9%	147 46.8%	36 11.5%
	합계	54 5.2%	136 13.1%	338 32.5%	418 40.3%	92 8.9%
가구 형태	1인 가구	7 6.2%	19 16.8%	41 36.3%	36 31.9%	10 8.8%
	1인 초과 가구	47 5.1%	117 12.7%	296 32.1%	380 41.2%	82 8.9%
	합계	54 5.2%	136 13.1%	337 32.6%	416 40.2%	92 8.9%



<그림 2> 혼인상태에 따른 4대약 관심도



<그림 3> 가구형태에 따른 4대약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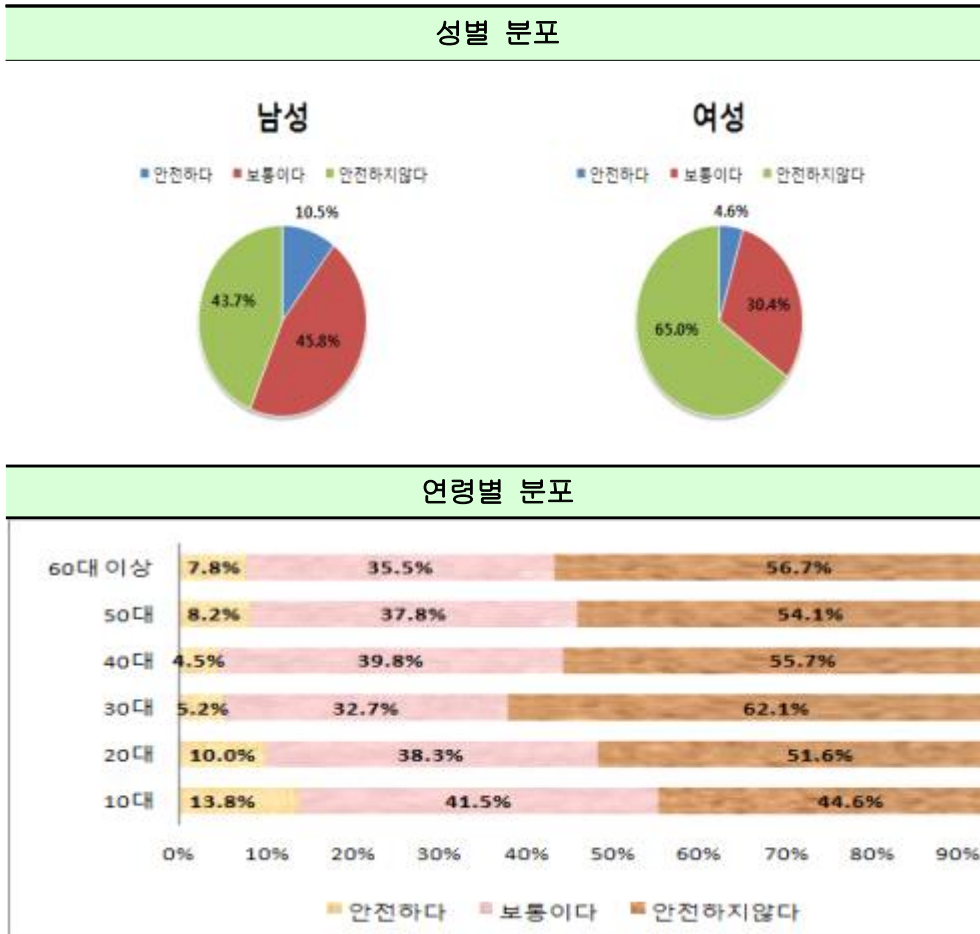
2.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

1) 성폭력 체감안전도

<표 3>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성폭력 체감안전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안전하 지않다
성 별	남성	3 0.7%	41 9.8%	192 45.8%	181 43.2%	2 0.5%
	여성	1 0.2%	22 4.4%	152 30.4%	324 64.8%	1 0.2%
	합계	4 0.4%	63 6.9%	344 37.4%	505 55.0%	3 0.3%
연 령	10대	0 0.0%	9 13.8%	27 41.5%	29 44.6%	0 0.0%
	20대	1 0.8%	11 9.2%	46 38.3%	61 50.8%	1 0.8%
	30대	0 0.0%	8 5.2%	50 32.7%	95 62.1%	0 0.0%
	40대	0 0.0%	11 4.5%	97 39.8%	134 54.9%	2 0.8%
	50대	0 0.0%	16 8.2%	74 37.8%	106 54.1%	0 0.0%
	60대 이상	3 2.1%	8 5.7%	50 35.5%	80 56.7%	0 0.0%
	합계	4 0.4%	63 6.9%	344 37.4%	505 55.0%	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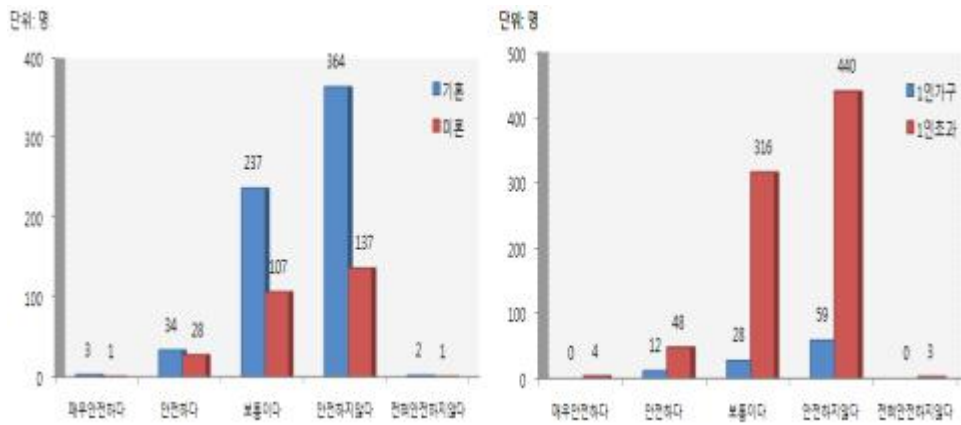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및 연령별 성폭력 체감안전도

<표 4>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성폭력 체감안전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혼 인 상 태	기혼	3 0.5	34 5.3	237 37.0	364 56.9	2 0.3
	미혼	1 0.4	28 10.2	107 39.1	137 50.0	1 0.4
	합계	4 0.4	62 6.8	344 37.6	501 54.8	3 0.3
가 구 형 태	1인 가구	0 0.0	12 12.1	28 28.3	59 59.6	0 0.0
	1인 초과가구	4 0.5	48 5.9	316 39.0	440 54.3	3 0.4
	합계	4 0.4	60 6.6	344 37.8	499 54.8	3 0.3



<그림 5>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성폭력 체감도

2) 가정폭력 체감안전도

<표 5>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정폭력 체감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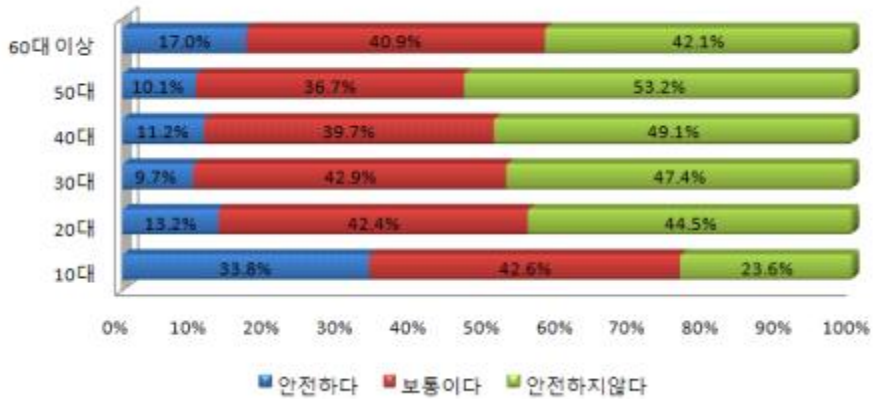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안전 하지않다
성별	남성	7 1.6%	79 17.6%	183 40.7%	160 35.6%	21 4.7%
	여성	2 0.3%	51 8.6%	237 40.1%	255 43.1%	46 7.8%
	합계	9 0.9%	130 12.5%	420 40.3%	415 39.9%	67 6.4%
연령	10대	0 0.0%	23 33.8%	29 42.6%	15 22.1%	1 1.5%
	20대	3 2.1%	16 11.1%	61 42.4%	55 38.2%	9 6.3%
	30대	0 0.0%	17 9.7%	75 42.9%	65 37.1%	18 10.3%
	40대	2 0.7%	29 10.5%	110 39.7%	118 42.6%	18 6.5%
	50대	1 0.5%	21 9.6%	80 36.7%	102 46.8%	14 6.4%
	60대 이상	3 1.9%	24 15.1%	65 40.9%	60 37.7%	7 4.4%
	합계	9 0.9%	130 12.5%	420 40.3%	415 39.9%	67 6.4%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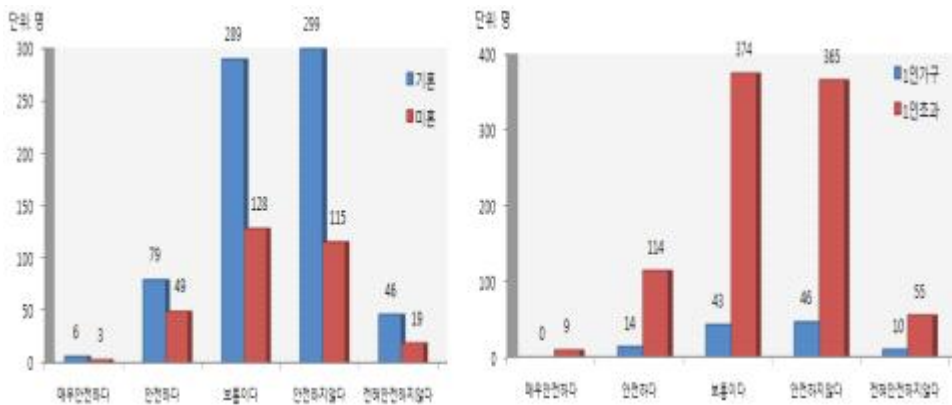


<그림 6> 성별 및 연령별 가정폭력 체감안전도

<표 6>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가정폭력 체감안전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혼인상태	기혼	6 0.8	79 11.0	289 40.2	299 41.6	46 6.4
	미혼	3 1.0	49 15.6	128 40.8	115 36.6	19 6.1
	합계	9 0.9	128 12.4	417 40.4	414 40.1	65 6.3
가구형태	1인 가구	0 0.0	14 12.4	43 38.1	46 40.7	10 8.8
	1인 초과가구	9 1.0	114 12.4	374 40.8	365 39.8	55 6.0
	합계	9 0.9	128 12.4	417 40.5	411 39.9	6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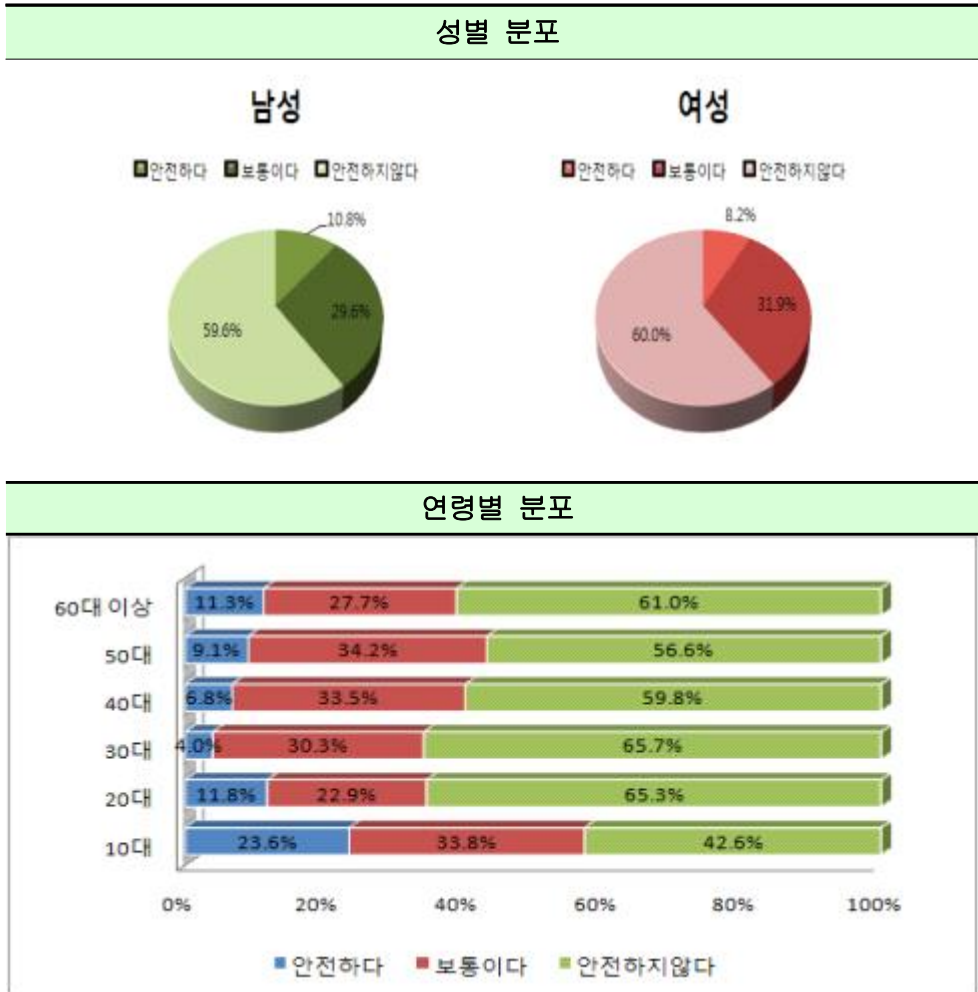
<그림 7>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가정폭력 체감도

3)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표 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않다
성별	남성	7 1.5%	42 9.3%	134 29.6%	223 49.3%	46 10.2%
	여성	2 0.3%	46 7.8%	187 31.6%	295 49.9%	61 10.3%
	합계	9 0.9%	88 8.4%	321 30.8%	518 49.7%	107 10.3%
연령	10대	1 1.5%	15 22.1%	23 33.8%	26 38.2%	3 4.4%
	20대	2 1.4%	15 10.4%	33 22.9%	70 48.6%	24 16.7%
	30대	0 0.0%	7 4.0%	53 30.3%	93 53.1%	22 12.6%
	40대	0 0.0%	19 6.8%	93 33.5%	135 48.6%	31 11.2%
	50대	2 0.9%	18 8.2%	75 34.2%	104 47.5%	20 9.1%
	60대 이상	4 2.5%	14 8.8%	44 27.7%	90 56.6%	7 4.4%
	합계	9 0.9%	88 8.4%	321 30.8%	518 49.7%	107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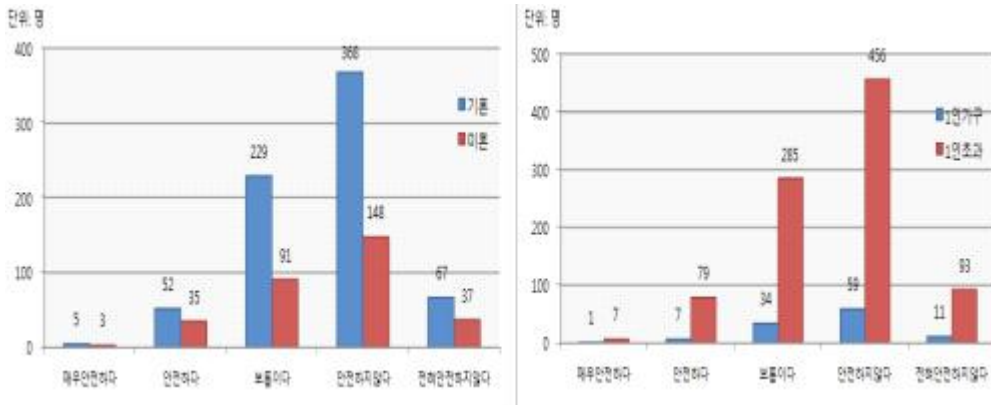


<그림 8> 성별 및 연령별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표 8>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안전하지 않다
혼 인 상 태	기혼	5 0.7%	52 7.2%	229 31.8%	368 51.0%	67 9.3%
	미혼	3 1.0%	35 11.1%	91 29.0%	148 47.1%	37 11.8%
	합계	8 0.8%	87 8.4%	320 30.9%	516 49.9%	104 10.0%
가 구 형 태	1인 가구	1 0.9%	7 6.3%	34 30.4%	59 52.7%	11 9.8%
	1인 초과가구	7 0.8%	79 8.6%	285 31.0%	456 49.6%	93 10.1%
	합계	8 0.8%	86 8.3%	319 30.9%	515 49.9%	104 10.1%



<그림 9>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학교폭력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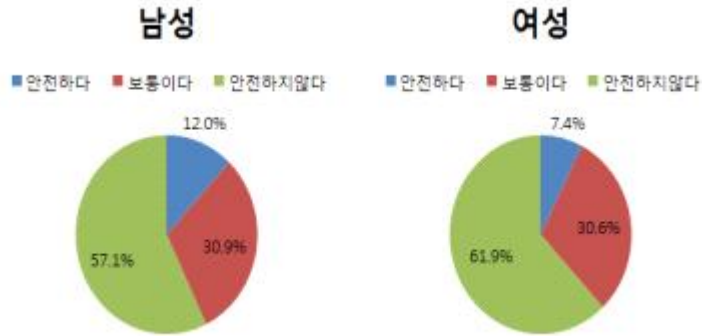
4) 불량식품 체감안전도

<표 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불량식품 체감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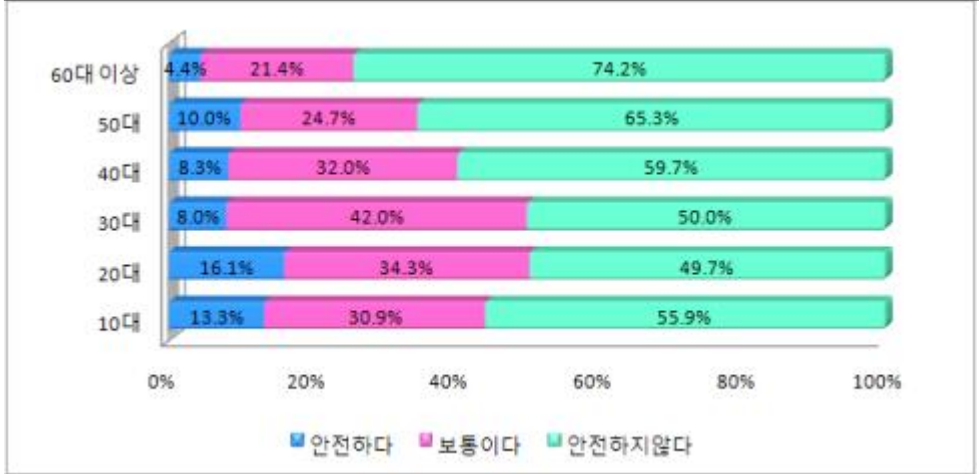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않다
성별	남성	2 0.4%	52 11.6%	139 30.9%	184 40.9%	73 16.2%
	여성	1 0.2%	43 7.3%	181 30.6%	267 45.2%	99 16.8%
	합계	3 0.3%	95 9.1%	320 30.7%	451 43.3%	172 16.5%
연령	10대	1 1.5%	8 11.8%	21 30.9%	34 50.0%	4 5.9%
	20대	2 1.4%	21 14.7%	49 34.3%	50 35.0%	21 14.7%
	30대	0 0.0%	14 8.0%	73 42.0%	66 37.9%	21 12.1%
	40대	0 0.0%	23 8.3%	89 32.0%	115 41.4%	51 18.3%
	50대	0 0.0%	22 10.0%	5 24.7%	106 48.4%	37 16.9%
	60대 이상	0 0.0%	7 4.4%	34 21.4%	80 50.3%	38 23.9%
	합계	3 0.3%	95 9.1%	320 30.7%	451 43.3%	172 16.5%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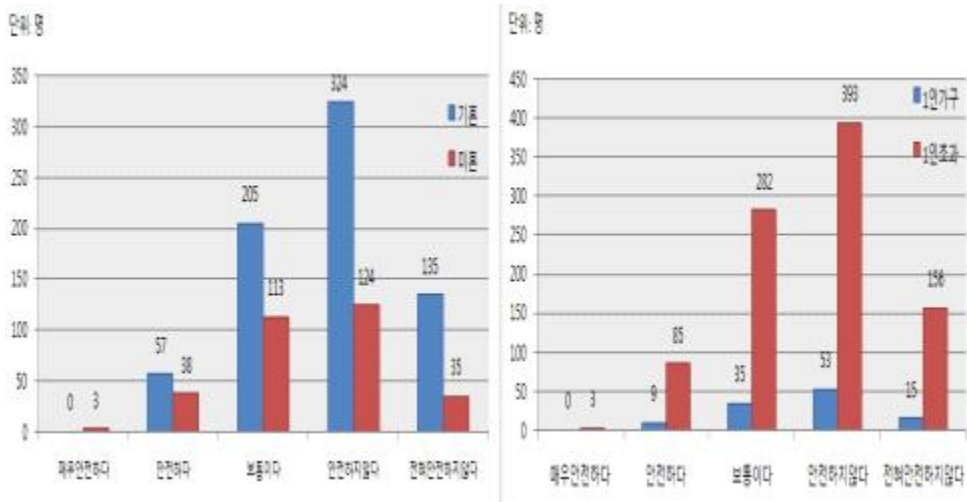


<그림 19> 성별 및 연령별 불량식품 체감안전도(2)

<표 19>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불량식품 체감안전도

(단위: 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안전하지 않다
혼인상태	기혼	0 0.0%	57 7.9%	205 28.4%	324 44.9%	135 18.7%
	미혼	3 1.0%	38 12.1%	113 36.1%	124 39.6%	35 11.2%
	합계	3 0.3%	95 9.2%	318 30.8%	448 43.3%	170 16.4%
가구형태	1인 가구	0 0.0%	9 9.0%	35 31.3%	53 47.3%	15 13.4%
	1인 초과가구	3 0.3%	85 9.2%	282 30.7%	393 42.8%	156 17.0%
	합계	3 0.3%	94 9.1%	317 30.7%	446 43.3%	171 16.6%



<그림 20>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불량식품 체감도

2.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 범주의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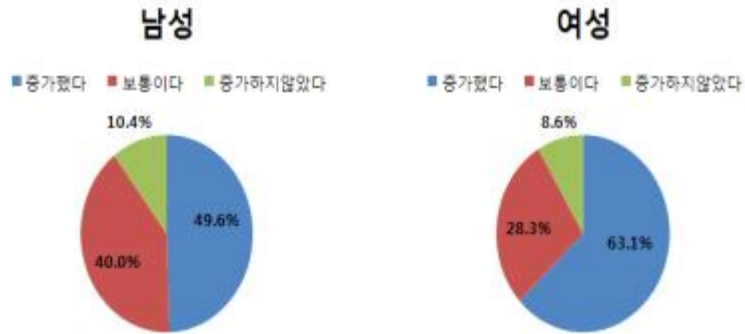
1) 성폭력

<표 2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성폭력 범죄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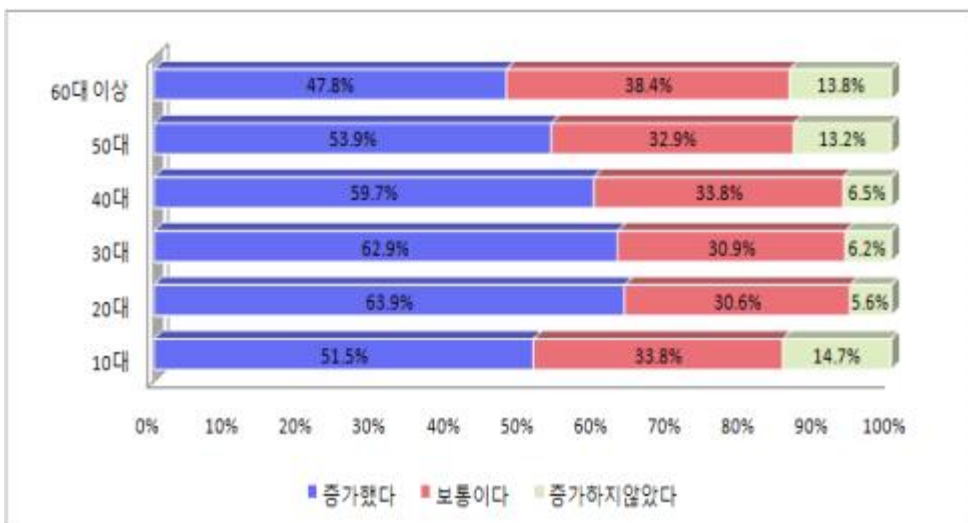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30 6.6%	194 42.9%	181 40.0%	42 9.3%	5 1.1%
	여성	79 13.4%	294 49.7%	167 28.3%	46 7.8%	5 0.8%
	합계	109 10.5%	488 46.8%	348 33.4%	88 8.4%	10 1.0%
연령	10대	4 5.9%	31 45.6%	23 33.8%	10 14.7%	0 0.0%
	20대	20 13.9%	72 50.0%	44 30.6%	7 4.9%	1 0.7%
	30대	21 12.0%	89 50.9%	54 30.9%	9 5.1%	2 1.1%
	40대	30 10.8%	136 48.9%	94 33.8%	16 5.8%	2 0.7%
	50대	24 11.0%	94 42.9%	72 32.9%	29 13.2%	0 0.0%
	60대 이상	10 6.3%	66 41.5%	61 38.4%	17 10.7%	5 3.1%
	합계	109 10.5%	488 46.8%	348 33.4%	88 8.4%	10 1.0%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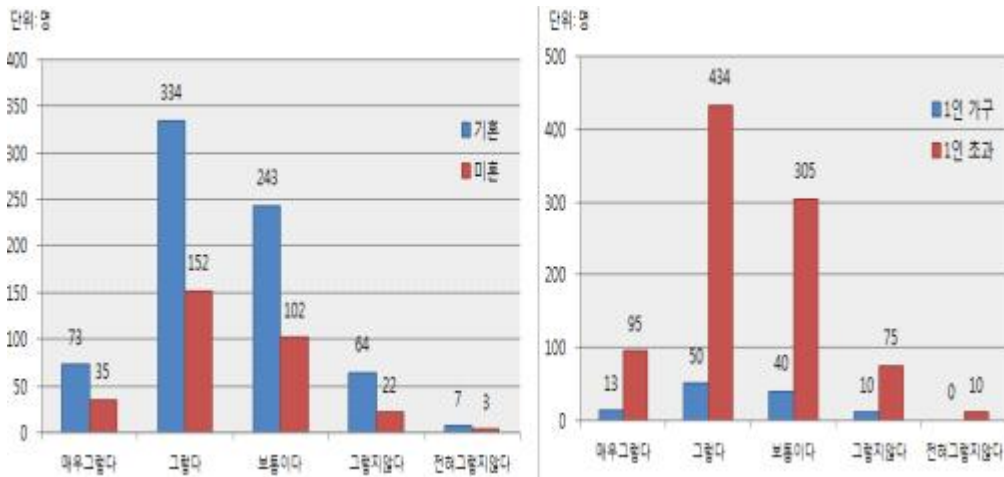


<그림 21> 성별 및 연령별 성폭력 범죄 증가 인식(2)

<표 21>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성폭력 범죄 증가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혼인 상태	기혼	73 10.1%	334 46.3%	243 33.7%	64 8.9%	7 1.0%
	미혼	35 11.1%	152 48.4%	102 32.5%	22 7.0%	3 1.0%
	합계	108 10.4%	486 47.0%	345 33.3%	86 8.3%	10 1.0%
가구 형태	1인 가구	13 11.5%	50 44.2%	40 35.4%	10 8.8%	0 0.0%
	1인 초과가구	95 10.3%	434 47.2%	305 33.2%	75 8.2%	10 1.1%
	합계	108 10.5%	484 46.9%	345 33.4%	85 8.2%	10 1.0%



<그림 22>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성폭력 범죄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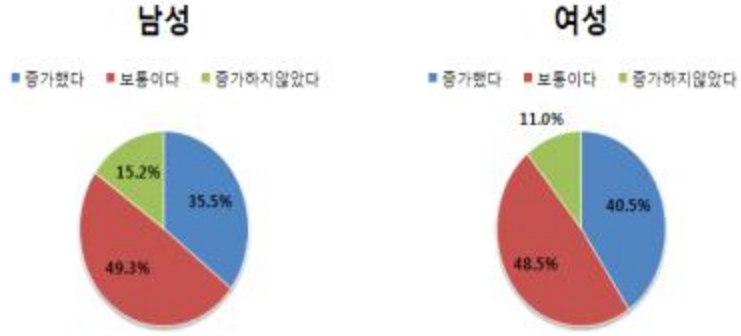
2) 가정폭력

<표 2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정폭력 범죄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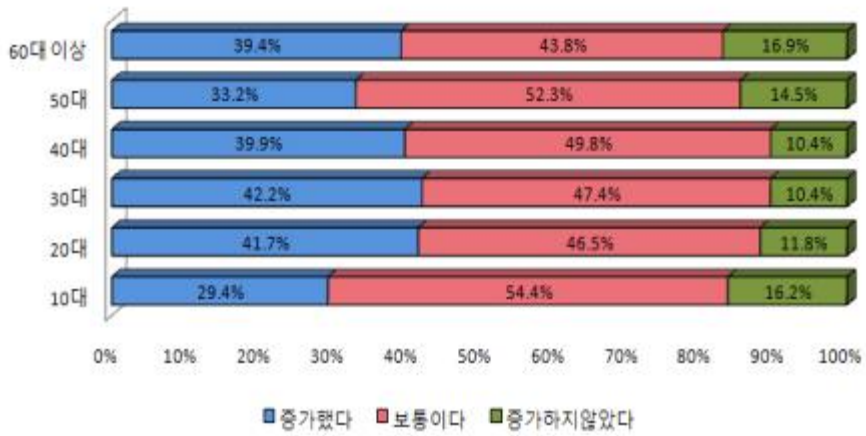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13 2.9%	146 32.6%	221 49.3%	61 13.6%	7 1.6%
	여성	33 5.7%	203 34.9%	282 48.5%	61 10.5%	3 0.5%
	합계	46 4.5%	349 33.9%	503 48.8%	122 11.8%	10 1.0%
연령	10대	2 2.9%	18 26.5%	37 54.4%	10 14.7%	1 1.5%
	20대	9 6.3%	51 35.4%	67 46.5%	13 9.0%	4 2.8%
	30대	10 5.8%	63 36.4%	82 47.4%	17 9.8%	1 0.6%
	40대	11 4.1%	97 35.8%	135 49.8%	27 10.0%	1 0.4%
	50대	7 3.3%	64 29.9%	112 52.3%	30 14.0%	1 0.5%
	60대 이상	7 4.4%	56 35.0%	70 43.8%	25 15.6%	2 1.3%
	합계	46 4.5%	349 33.9%	503 48.8%	122 11.8%	10 1.0%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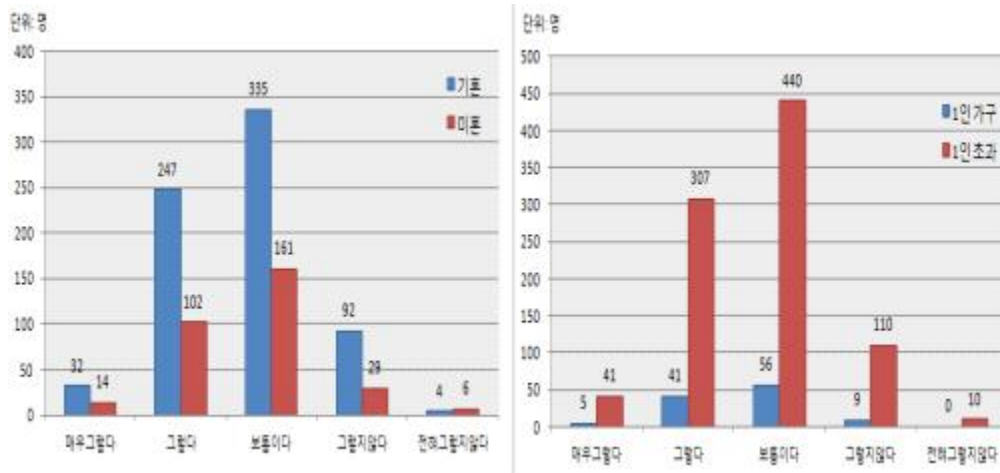


<그림 23> 성별 및 연령별 가정폭력 범죄 증가 인식

<표 23>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가정폭력 범죄 증가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혼인 상태	기혼	32 4.5%	247 34.8%	335 47.2%	92 13.0%	4 0.6%
	미혼	14 4.5%	102 32.7%	161 51.6%	29 9.3%	6 1.9%
	합계	46 4.5%	349 34.1%	496 48.5%	121 11.8%	10 1.0%
가구 형태	1인 가구	5 4.5%	41 36.9%	56 50.5%	9 8.1%	0 0.0%
	1인 초과가구	41 4.5%	307 33.8%	440 48.5%	110 12.1%	10 1.1%
	합계	46 4.5%	348 34.1%	496 48.6%	120 11.8%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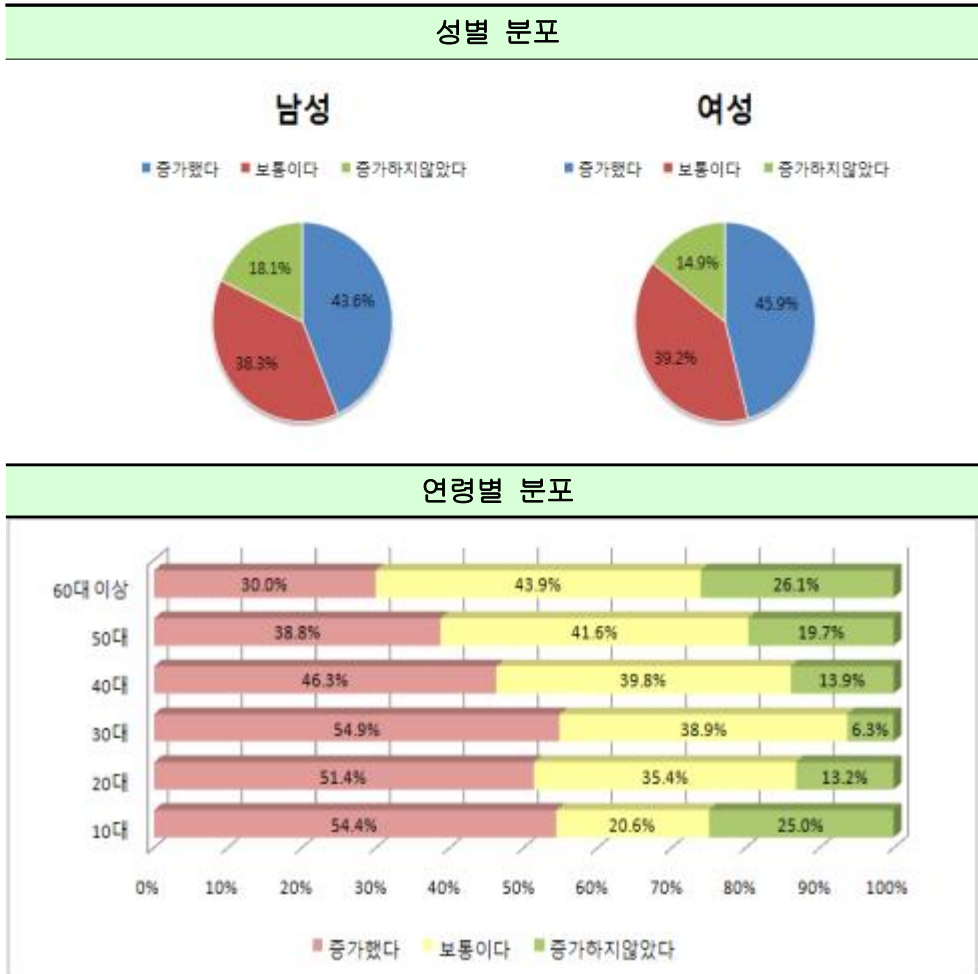
<그림 24>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가정폭력 범죄 증가 인식

3) 학교폭력

<표 2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38 8.4%	159 35.2%	173 38.3%	78 17.3%	4 0.9%
	여성	51 8.6%	220 37.3%	231 39.2%	84 14.2%	4 0.7%
	합계	89 8.5%	379 36.4%	404 38.8%	162 15.5%	8 0.8%
연령	10대	7 10.3%	30 44.1%	14 20.6%	16 23.5%	1 1.5%
	20대	19 13.2%	55 38.2%	51 35.4%	18 12.5%	1 0.7%
	30대	21 12.0%	75 42.9%	68 38.9%	10 5.7%	1 0.6%
	40대	20 7.2%	109 39.1%	111 39.8%	35 12.5%	4 1.4%
	50대	15 6.8%	70 32.0%	91 41.6%	42 19.2%	1 0.5%
	60대 이상	7 4.5%	40 25.5%	69 43.9%	41 26.1%	0 0.0%
	합계	89 8.5%	379 36.4%	404 38.8%	162 15.5%	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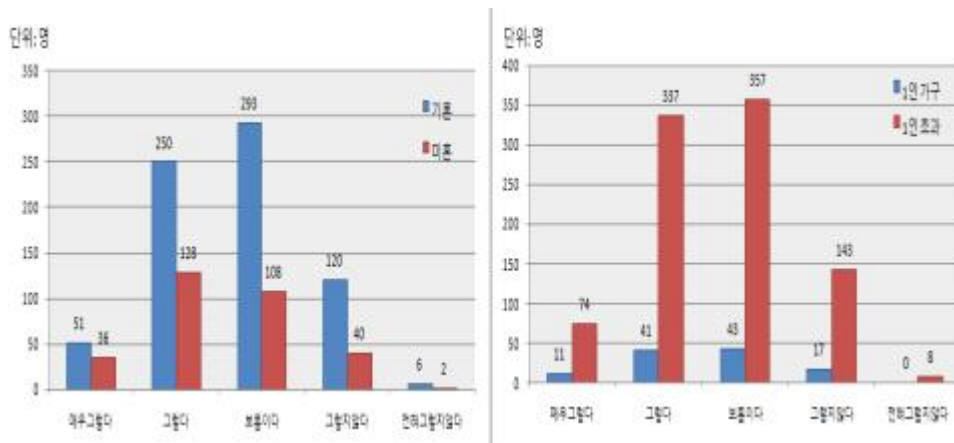


<그림 25> 성별 및 연령별 학교폭력 증가 인식

<표 24>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혼 인 상 태	기혼	51 7.1%	250 34.7%	293 40.7%	120 16.7%	6 0.8%
	미혼	36 11.5%	128 40.8%	108 34.4%	40 12.7%	2 0.6%
	합계	87 8.4%	378 36.6%	401 38.8%	160 15.5%	8 0.8%
가 구 형 태	1인 가구	11 9.8%	41 36.6%	43 38.4%	17 15.2%	0 0.0%
	1인 초과가구	74 8.1%	337 36.7%	357 38.8%	143 15.6%	8 0.9%
	합계	85 8.2%	378 36.7%	400 38.8%	160 15.5%	8 0.8%



<그림 26>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학교폭력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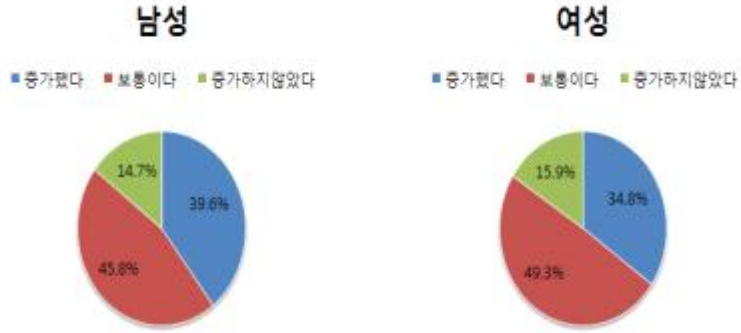
4) 불량식품

<표 3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불량식품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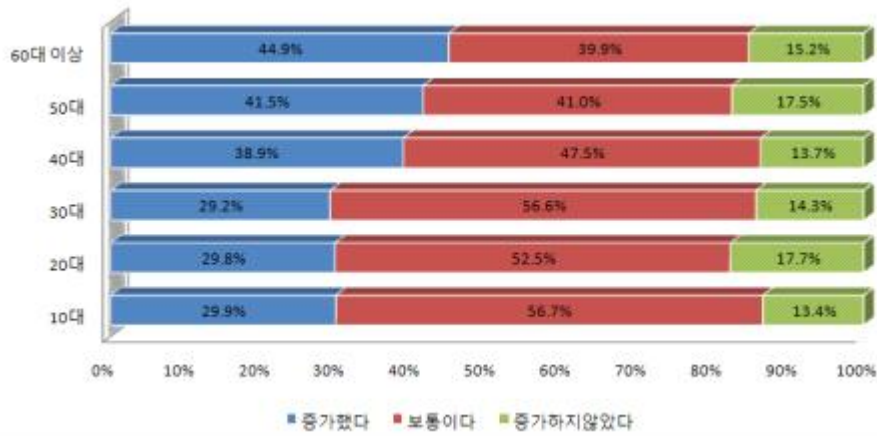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36 8.0%	142 31.6%	206 45.8%	61 13.6%	5 1.1%
	여성	47 8.0%	157 26.8%	289 49.3%	86 14.7%	7 1.2%
	합계	83 8.0%	299 28.9%	495 47.8%	147 14.2%	12 1.2%
연령	10대	3 4.5%	17 25.4%	38 56.7%	9 13.4%	0 0.0%
	20대	10 7.1%	32 22.7%	74 52.5%	24 17.0%	1 0.7%
	30대	8 4.6%	43 24.6%	99 56.6%	24 13.7%	1 0.6%
	40대	26 9.4%	82 29.5%	132 47.5%	32 11.5%	6 2.2%
	50대	24 11.1%	66 30.4%	89 41.0%	36 16.6%	2 0.9%
	60대	12 7.6%	59 37.3%	63 39.9%	22 13.9%	2 1.3%
	이상	83 8.0%	299 28.9%	495 47.8%	147 14.2%	12 1.2%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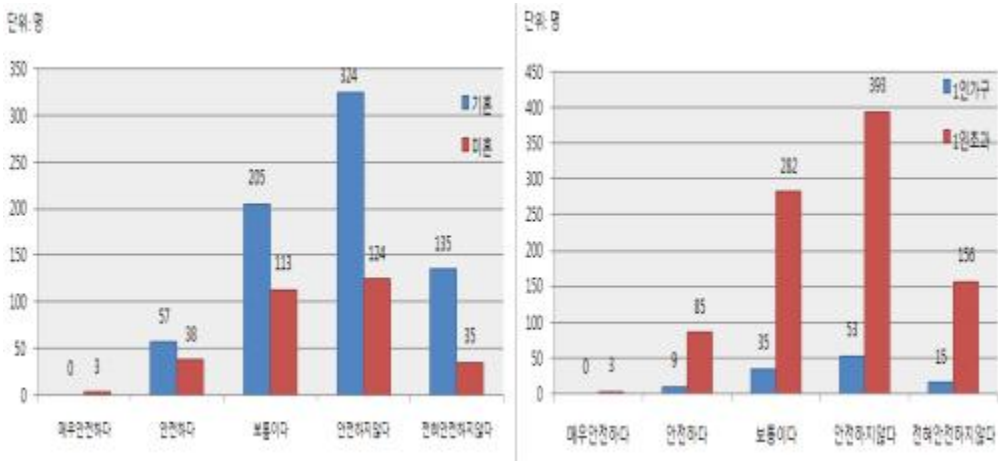


<그림 27> 성별 및 연령별 불량식품 증가 인식

<표 27>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불량식품 증가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혼인 상태	기혼	63 8.8%	220 30.6%	329 45.8%	96 13.4%	10 1.4%
	미혼	19 6.1%	77 24.7%	163 52.2%	51 16.3%	2 0.6%
	합계	82 8.0%	297 28.8%	492 47.8%	147 14.3%	12 1.2%
가구 형태	1인 가구	11 9.7%	37 32.7%	46 40.7%	16 14.2%	3 2.7%
	1인 초과가구	71 7.8%	257 28.1%	446 48.8%	131 14.3%	9 1.0%
	합계	82 8.0%	294 28.6%	492 47.9%	147 14.3%	12 1.2%



<그림 28>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 불량식품 증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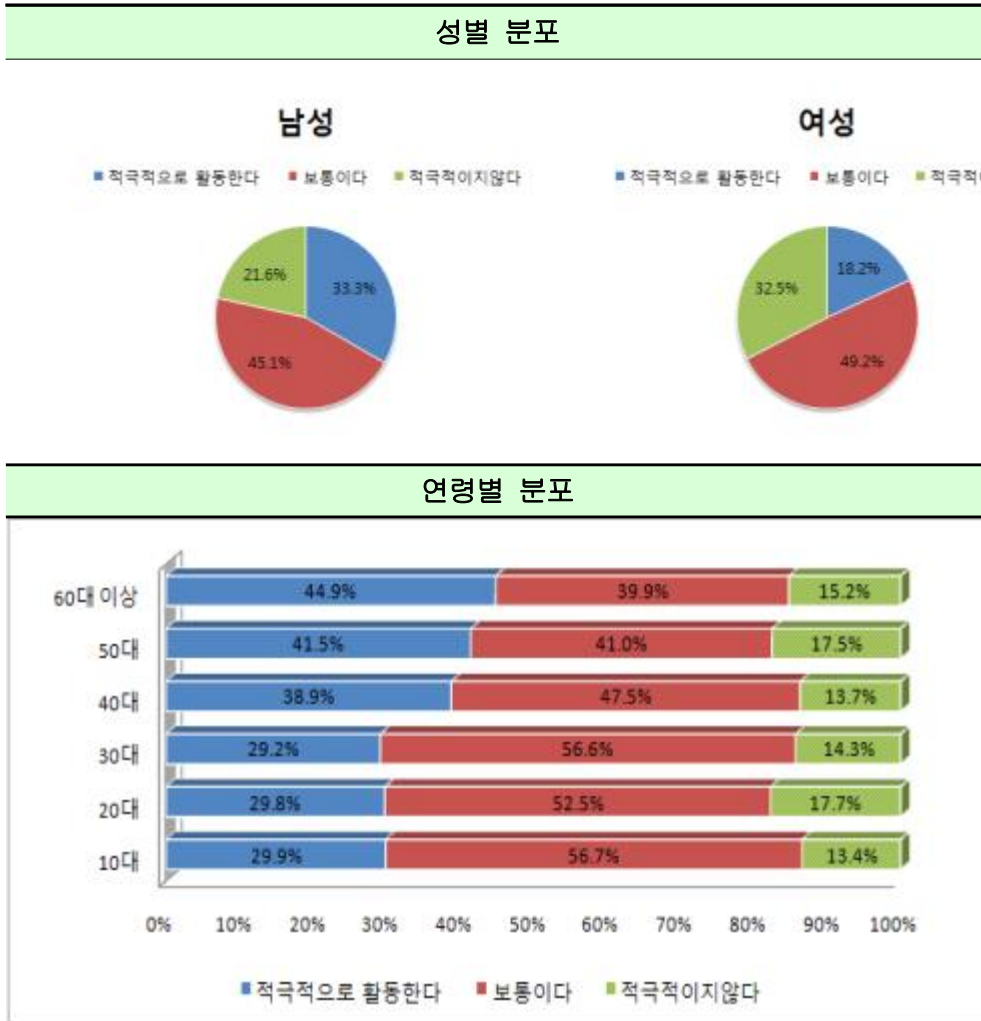
3.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1) 성폭력

<표 2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38 8.0%	112 31.6%	203 45.8%	79 13.6%	18 1.1%
	여성	21 8.0%	86 26.8%	289 49.3%	163 14.7%	28 1.2%
	합계	59 8.0%	198 28.9%	492 47.8%	242 14.2%	46 1.2%
연령	10대	12 4.5%	19 25.4%	36 56.7%	1 13.4%	0 0.0%
	20대	5 7.1%	28 22.7%	70 52.5%	27 17.0%	12 0.7%
	30대	3 4.6%	21 24.6%	86 56.6%	56 13.7%	8 0.6%
	40대	6 9.4%	44 29.5%	143 47.5%	74 11.5%	11 2.2%
	50대	16 11.1%	46 30.4%	89 41.0%	53 16.6%	12 0.9%
	60대 이상	17 7.6%	40 37.3%	68 39.9%	31 13.9%	3 1.3%
	합계	59 8.0%	198 28.9%	492 47.8%	242 14.2%	4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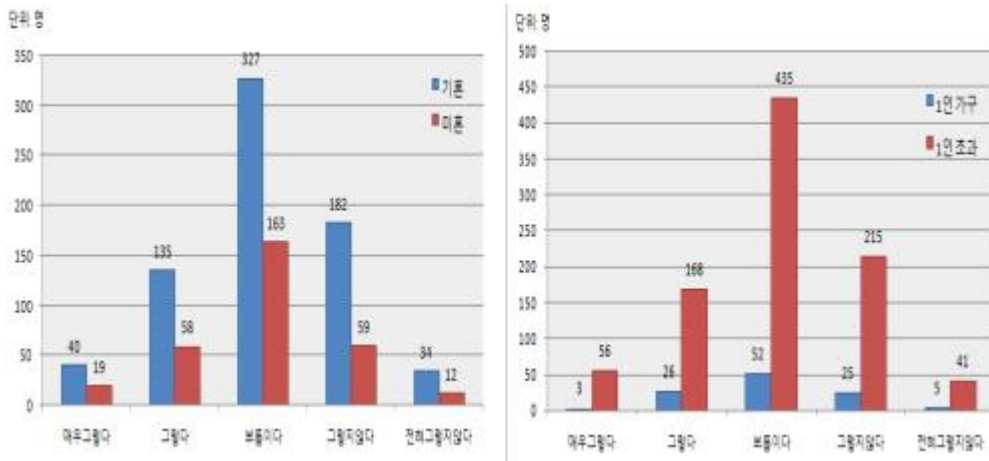


<그림 29> 성별 및 연령별 경찰활동 인식

<표 29>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혼인 상태	기혼	40 5.6%	135 18.8%	327 45.5%	182 25.3%	34 4.7%
	미혼	19 6.1%	58 18.6%	163 52.4%	59 19.0%	12 3.0%
	합계	59 5.7%	193 18.8%	490 47.6%	241 23.4%	46 4.5%
가구 형태	1인 가구	3 2.7%	26 23.4%	52 46.8%	25 22.5%	5 4.5%
	1인 초과가구	56 6.1%	168 18.4%	435 47.5%	215 23.5%	41 4.5%
	합계	59 5.8%	194 18.9%	487 47.5%	240 23.4%	46 4.5%



<그림 30>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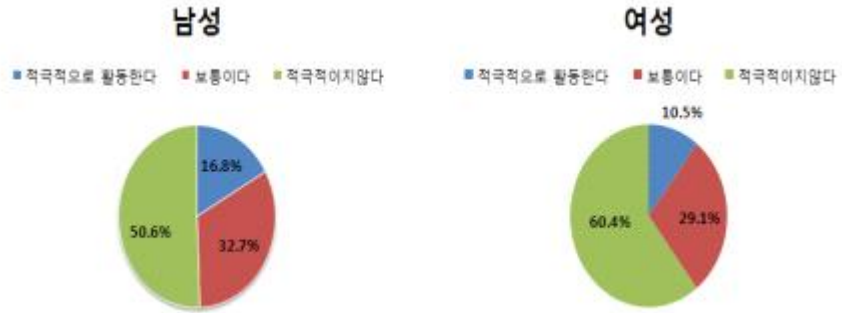
2) 가정폭력

<표 3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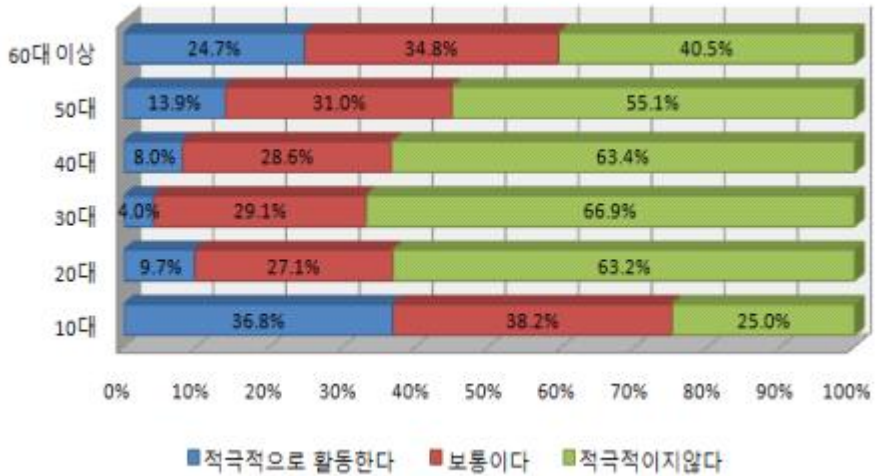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14 3.1%	61 13.6%	146 32.7%	187 41.8%	39 8.7%
	여성	10 1.7%	52 8.8%	172 29.1%	286 48.4%	71 12.0%
	합계	24 2.3%	113 10.9%	317 30.6%	473 45.6%	110 10.6%
연령	10대	3 4.4%	22 32.4%	26 38.2%	15 22.1%	2 2.9%
	20대	1 0.7%	13 9.0%	39 27.1%	70 48.6%	21 14.6%
	30대	0 0.0%	7 4.0%	51 29.1%	84 48.0%	33 18.9%
	40대	3 1.1%	19 6.9%	79 28.6%	142 51.4%	33 12.0%
	50대	4 1.9%	26 12.0%	67 31.0%	103 47.7%	16 7.4%
	60대 이상	13 8.2%	26 16.5%	55 34.8%	59 37.3%	5 3.2%
	합계	24 2.3%	113 10.9%	317 30.6%	473 45.6%	110 10.6%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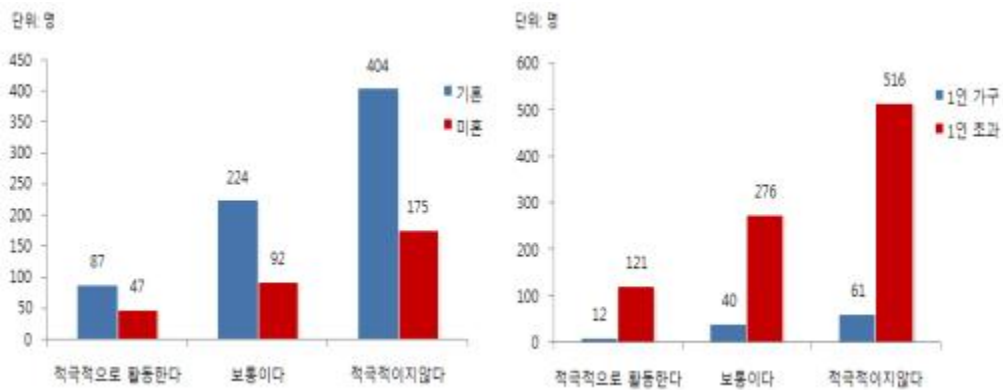


<그림 31> 성별 및 연령별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표 35>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혼인 상태	기혼	20 2.8%	67 9.4%	224 31.3%	337 47.1%	67 9.4%
	미혼	4 1.3%	43 13.7%	92 29.3%	132 42.0%	43 13.7%
	합계	24 2.3%	110 10.7%	316 30.7%	469 45.6%	110 10.7%
가구 형태	1인 가구	2 1.8%	10 8.8%	40 35.4%	44 38.9%	17 15.0%
	1인 초과가구	22 2.4%	99 10.8%	276 30.2%	424 46.4%	92 10.1%
	합계	24 2.3%	109 10.6%	316 30.8%	468 45.6%	109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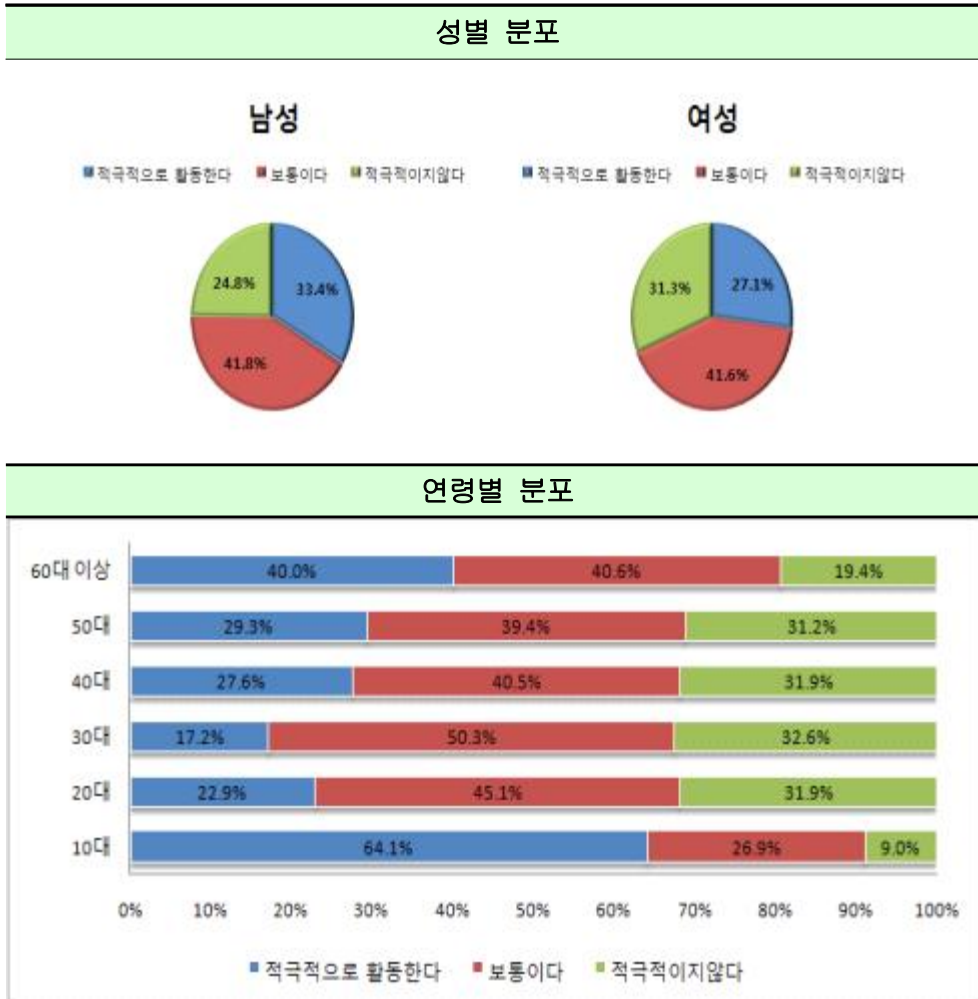
<그림 32>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3) 학교폭력

<표 3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28 6.2%	123 27.2%	189 41.8%	90 19.9%	22 4.9%
	여성	27 4.6%	133 22.5%	246 41.6%	162 27.4%	23 3.9%
	합계	55 5.3%	256 24.5%	435 41.7%	252 24.2%	45 4.3%
연령	10대	8 11.9%	35 52.2%	18 26.9%	6 9.0%	0 0.0%
	20대	5 3.5%	28 19.4%	65 45.1%	34 23.6%	12 8.3%
	30대	1 0.6%	29 16.6%	88 50.3%	47 26.9%	10 5.7%
	40대	8 2.9%	69 24.7%	113 40.5%	77 27.6%	12 4.3%
	50대	14 6.4%	50 22.9%	86 39.4%	61 28.0%	7 3.2%
	60대 이상	19 11.9%	45 28.1%	65 40.6%	27 16.9%	4 2.5%
	합계	55 5.3%	256 24.5%	435 41.7%	252 24.2%	4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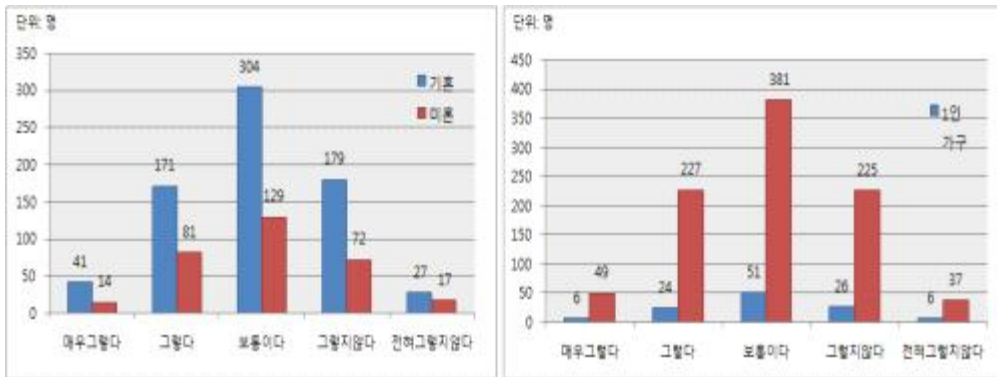


<그림 33> 성별 및 연령별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표 33>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혼인 상태	기혼	41 5.7%	171 23.7%	304 42.1%	179 24.8%	27 3.7%
	미혼	14 4.5%	81 25.9%	129 41.2%	72 23.0%	17 5.4%
	합계	55 5.3%	252 24.3%	433 41.8%	251 24.3%	44 4.3%
가구 형태	1인 가구	6 5.3%	24 21.2%	51 45.1%	26 23.0%	6 5.3%
	1인 초과가구	49 5.3%	227 24.7%	381 41.5%	225 24.5%	37 4.0%
	합계	55 5.3%	251 24.3%	432 41.9%	251 24.3%	43 4.2%



<그림 34>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4) 불량식품

<표 3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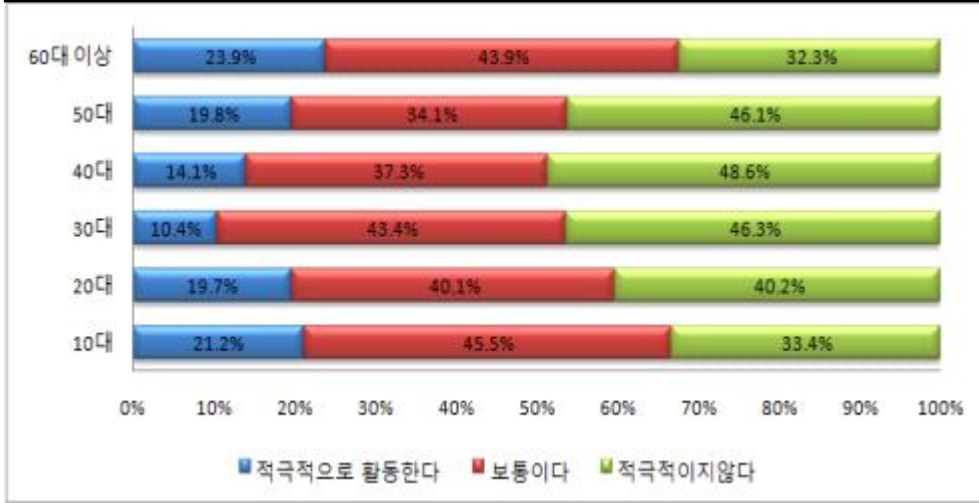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별	남성	11 2.5%	76 17.0%	181 40.4%	136 30.4%	44 9.8%
	여성	9 1.5%	83 14.3%	226 38.9%	209 36.0%	54 9.3%
	합계	20 1.9%	159 15.5%	407 39.6%	345 33.5%	98 9.5%
연령	10대	2 3.0%	12 18.2%	30 45.5%	18 27.3%	4 6.1%
	20대	3 2.1%	25 17.6%	57 40.1%	40 28.2%	17 12.0%
	30대	0 0.0%	18 10.4%	75 43.4%	66 38.2%	14 8.1%
	40대	3 1.1%	36 13.0%	103 37.3%	110 39.9%	24 8.7%
	50대	3 1.4%	40 18.4%	74 34.1%	71 32.7%	29 13.4%
	60대 이상	9 5.8%	28 18.1%	68 43.9%	40 25.8%	10 6.5%
	합계	20 1.9%	159 15.5%	407 39.6%	345 33.5%	98 9.5%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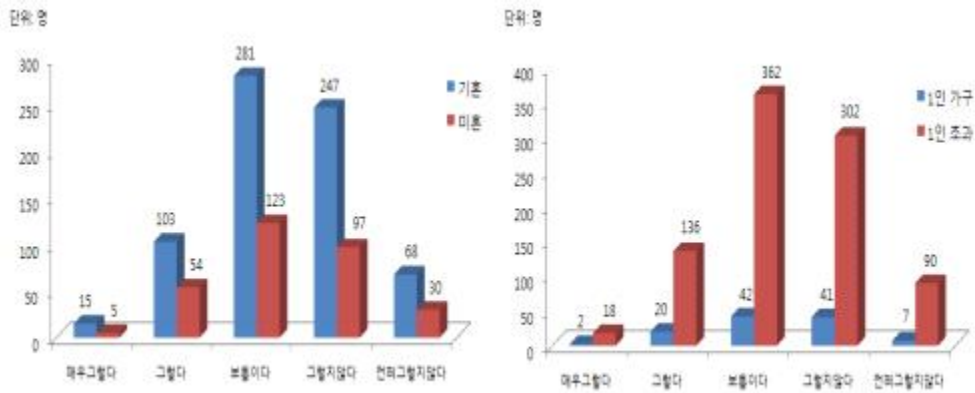
<그림 35> 성별 및 연령별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표 39>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단위: 명/ 비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혼인 상태	기혼	15 2.1%	103 14.4%	281 39.4%	247 34.6%	68 9.5%

	미혼	5 1.6%	54 17.5%	123 39.8%	97 31.4%	30 9.7%
	합계	20 2.0%	157 15.3%	404 39.5%	344 33.6%	98 9.6%
가구 형태	1인 가구	2 1.8%	20 17.9%	42 37.5%	41 36.6%	7 6.3%
	1인 초과가구	18 2.0%	136 15.0%	362 39.9%	302 33.3%	90 9.9%
	합계	20 2.0%	156 15.3%	404 39.6%	343 33.6%	97 9.5%



<그림 36>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경찰활동 인식

책임연구보고서 2014-11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

2015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